

제1권 제2호
2010

한국이민학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연구논문

한인(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이철우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대응 양상과 실천적 함의

김이선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장지혜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한국이민학

2010년 제1권 제2호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및 집필요강은 본지의 뒷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회 사무국

전화: (063) 270-2917 팩스: (063) 270-2921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3만원

대학원생: 2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회 임원진

회 장 단

회 장	이혜경 (배재대학교)		
차기회장	한경구 (서울대학교)		
부 회 장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우 (연세대학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감 사	하갑래 (단국대학교)	이정혜 (IOM한국대표부)	

이 사

총무이사	설동훈 (전북대학교)	편집이사	한건수 (강원대학교)
연구이사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이사	이진영 (인하대학교)
섭외이사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이사	김현미 (연세대학교)

한국이민학

2010년 제1권 제2호

연구논문

한인(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이철우	5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대응 양상과 실천적 함의 김이선 ..	37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장지혜	67

부록

한국이민학회 정관	97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105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109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111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117

편집위원

한건수(위원장, 강원대) 설동훈(부위원장, 전북대) 김현미(연세대)
서정민(연세대) 윤홍식(인하대) 이규용(노동연구원) 이승미(우석대)
이정환(청주대) 조현미(경북대) 최현(제주대) 최홍엽(조선대)

편집간사

박순영(전북대) 서영효(전북대) 고재훈(전북대)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1 No.2 2010

Contents

ARTICLES

- The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Classification,
Boundary Delimitation and Membership Determination of Koreans
| Chulwoo Lee
 -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ponses to Their Children's Education
Problems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 Yiseon Kim
 -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in Korea
| Ji-Hye Jang
-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연구논문

한인(韓人)의 분류, 경계 확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이철우**

이 글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국적동포라는 두 개의 한국인 지위가 어떻게 제도화되었고 이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원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밝힌다. 흔히 한국인의 민족관념은 종족적 또는 혈연적이라 말한다. 그 근거로서 혈통을 기준으로 국민을 정의하고 혈통에 기초하여 동포를 특별히 취급하고 있음을 거론한다. 이 글은 개인을 국민으로 취급하고 혈통에 의거하여 동포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의 행정은 주권적 결단의 결과만이 아니라 통치성(governmentality)의 정치가 작용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창출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었는지를 살피고, 중국과 구소련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분리되었는지를 추적하며, 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해 국민 지위를 취득하려는 사람, 그리고 하위의 민족성원권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인임을 주장, 입증하는지를 서술한다. 이를 통해 종족적 민족주의로 특징지어지는, 그러나 단순화할 수 없는 한인의 삶이 가로놓인 다층적 실재를 보여준다.

주제어: 국적,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중국동포, 디아스포라, 종족성, 귀화, 통치성(governmentality), 생명권력(biopower)

* 이 글은 한국사회학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가 2009년 9월 공동 주최한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분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사회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철우·이호택의 논문 「한인(韓人)의 분류, 경계 확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중 이철우가 집필한 전반부를 수정 가필한 것이다. 필자는 그 발표문의 본인 집필 부분을 바탕으로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제하의 논문을 작성하여 *Citizenship Studies*에 투고했다. 초고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도움을 준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등 정부 실무자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린다. 특히 1990년대 직접 경험한 법무부의 국적실무를 술회해준 석동현 감사장(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귀환 독립유공자와 가족의 신원 확인 실무를 친절하게 설명해준 국가보훈처 채순희 사무관께 감사한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hulwoo.lee@yonsei.ac.kr.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한인(韓人)의 정체성이 어떻게 제도화된 소속 지위로 구현되는가를 주제로 한다. 그동안 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정체성의 내용적 성격을 규명하고 정체성의 준거가 되는 종족성(種族性, ethnicity) 및 민족적 실존의 역사적 배경과 사실적 근거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한 논의에서 한인의 정체성은 종족적 민족주의에 의해 구성, 추동, 재생산되었다는 점이 유력하게 지적되어왔다(Shin, 2006).¹⁾

종족적 민족주의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된 관념적 재료이다. 그러나 종족적 민족주의는 다층적 실재 중 한 층위를 구성할 뿐이다. 다른 층위에서는 세계를 국가로 분절하는 국제규범이 민족에의 소속을 국가에의 소속으로써 가로 뚫는다. 그리고 국민국가가 불가피하게 영토국가라는 사실에 의해 영토 내 외의 거주를 기준으로 법적 지위가 더욱 세분화된다. 게다가 분단 상황에 대한 헌법과 국제법의 상이한 태도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또 다른 층위에서는 한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여러 집단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차별화하는 제도적, 사회적 구획이 행해진다. 이로써 국내 거주 국민,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조교(朝僑), 재외동포채류 자격(F-4) 소지자, 방문취업자(H-2) 등 다양한 범주의 한인이 제도화된다.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추상적 관념과 계서화된 민족(Hierarchical Nationhood)의 존재 현실 사이의 괴리,²⁾ 그리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다층적 실재를 복합적으로 탐구하려는 근래의 문제의식은 한인의 종족주의적 정체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거나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탈)민족주의와 시민권 담론, 그리고 당위론적 동포정책 또는 그에 대한 규범적 비판 담론의 수준을 뛰어넘어 한인의 자기상상에 대한 현실인식을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³⁾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사적 진전에 가세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온 포섭과 배제의 행정적 기법(技法)에 주목한다.

집단을 구획하고 개인을 소속에 따라 처우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동기화된 정치적 결단에 기초한다. 가장 시원적인 정치적 결단은 그 결단을 내리는 주권

1) 그러한 지적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규범적 관점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론적 시각에서 민족을 말하는가—예를 들어, 원초주의(Primordialism)와 구성주의—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지 않다. 김경일(2006: 510-517)은 Ethnic Nationalism을 혈연민족주의로 번역하는데 워커 코너(Connor, 1994)의 Ethnonationalism 정의에 부합한다.

2) 계서화된 민족의 개념은 Seol and Skrentny (2009) 참조.

3) 박명규(2008)가 한국의 내셔널 담론에서 식별하는 국민적, 민족적, 종족적 유형은 실천과 제도에 서로 나타나며, 여기에서 말하는 실재의 여러 층위들을 구성한다.

인민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결단의 주체가 그 결단의 효력에 의해 창출된다는 패러독스를 수반한다(테리다, 2004; 김성호, 2008). 선존하는 역사적 종족적·문화적 공동체는 이 결단에 의해 주권인민에 포섭되는 집단과 배제되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주권의 작용은 계속하여 결정의 정치적 토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법적 실재를 만들어내며, 그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분배받는 집단들이 세분화된다. 나아가 집단의 구획은 특정 개인의 소속을 판별하고 확인하는 행정적 실천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나 행정적 실천은 포섭과 배제의 정치적 기획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포섭과 배제의 행정적 실천은 합법/불법의 이항대립적 판단이라는 법 체계에 특유한 코드에 구속된다. 아울러 행정 실무는 고유한 논리와 동력을 갖는다. 그것은 정치적 결정의 인지적 기초를 이루는 실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실재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역으로 기속(羈束)되는 반사적 순환(Reflexive Circularity) 속에서 행해진다. 이렇게 작동하는 다층적 실재들의 상대적 자율성에 의해 단일한 역사적·종족적·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법적, 행정적 구획 사이에 모순과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 연구는 그러한 모순과 불일치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는다.

이 연구에서는 한민족을 여러 집단으로 계서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과 구분된 집단에 개인을 배속하는 실무의 현실을 탐구하려 한다. 집단을 구분하고 구분된 집단에 개인을 배속하는 작업은 고도의 권력 행사를 수반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결단과 결단의 성문화라는 주권의 작용이다. 한편 그것은 인구를 규칙성을 갖는 실체로서 인지하고 인구에 속한 개인의 속성과 상태를 파악하는 합리성의 작용, 즉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기반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민족을 경계짓고 구분하는 정치와 행정”의 주권적 차원과 통치성의 차원을 동시에 천착하고, 집단의 구획과 개인의 소속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정치적·법적 권력과 생명권력(Biopower)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의 논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 구획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제도적 창출을 살펴보는 데에서 시작한다. 즉 역사공동체로서 한민족이 어떻게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전화했는지, 대한민국의 국가인민(Staatsvolk)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경계지어졌는지를 추적한다. 여기에서는 국가인민의 정당성을 민족에서 찾으면서도 민족의 제도적 존재성이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패러독스가 어떻게 일본제국 주주의 통치성에 매개되었는지를 성찰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재외한인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법적으로 분리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재구성, 제도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의 소속을 판별하는 방식의

특수성을 검토한다. 이어, 분절된(Segmented) 노동시장의 요구에 의해 두 종류의 제도화된 혈연외국인(Kin-Foreigners)의 지위—재외동포체류자격과 방문취업자격—가 형성된 과정을 관견(管見)하고 그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행정적 조건을 살핀다. 이 절의 마지막 소절에서는, 민족성원이 동심원적 민족공동체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즉 방문취업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 국적으로 진입하는 데 각각 필요로 되는 요건과 절차를 분석한다. 이는 중심으로의 진입 정도에 따라 달리 작용하는 통치성과 생명권력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 글은 한인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한 집단을 다루지 않고 있다. 북한인이 그들이다. 북한인의 지위와 경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급을 통해 명징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취급은 분단의 현실에서 초래되는 추상적·원리적 대한민국 국민과 구체적·현실적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⁴⁾

Ⅱ. 국민의 제도적 창출

글로벌시대에도 국가에의 소속은 여전히 사람의 생존기회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주권평등의 원칙은 이상일 뿐 국가들은 부와 권력에 따라 계서화되며 국적과 시민권에도 위계가 있다(Castles, 2005: 689-692).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는가는 세계 속의 개인의 위치와 운명을 결정한다.

지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는 국가들이 공모하여 지구를 분할하고 인구를 나눠가지는 시스템이다. 국민국가로 분절된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에 소속되었는지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소속하는 것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4조와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는 아동의 국적취득권을 명시했다. 국적은 이처럼 권리로 보장되지만 이는 개인을 국가에 강제로 배속시키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권리협약’은 곧바로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 출

4)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분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사회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철우·이호택의 논문 “‘한인(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의 후반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를 다룬다. 이 부분은 차후 별개의 논문으로 제공할 것이다.

생에 의해 어느 나라 국민으로 등록되면 그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⁵⁾

출생과 더불어 어느 국가에 소속되고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근대인의 삶의 본질적 조건이다. 국가에의 소속은 오늘날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러나 유례 없이 강고한 귀속 지위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다수는 출생에 의해 국민이 되었다.⁶⁾ 서호철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오늘날 일상적으로 현실의 국민/민족공동체를 유지·재생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원 개개인에게 시민자격 또는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함께 국가를 건설하고 그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열렬한 청원이나 맹세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출생’이라는 생물학적 사실 자체이다…… 핏줄에 따르건 출생지에 따르건,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때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자동적으로 국적민이자 시민권자인 반면, 출생과 무관하게 국민/민족공동체를 선택하고자 하는 희망은 많은 경우 냉정하게 거절당한다. 출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기란 매우 어렵고, ‘귀화’나 ‘naturalizatio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서호철, 2008: 94-95).

출생시 국적을 부여하는 두 개의 원리 중 혈통주의(*Ius Sanguinis*)는 폐쇄적인 종족적 민족주의를, 출생지주의(*Ius Soli*)는 개방적인 시민적(Civic) 국민 구성 원리를 표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이다. 서호철의 지적대로 어느 것이나 출생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에 기초해 사람의 지위를 정한다. 또 민족/국민 구성의 종족적 경로와 시민적 경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념형으로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특정 사회에 대한 일도양단의 판정 기준으로는 적합지 않다.⁷⁾ 그 이분법적 도식에서 시민적 국민 구성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프랑스가 혈통주의 국적법의 발명자라는 사실은 종종 간과된다. 혁명 후의 프랑스는 영토에 대한 절대 군주의 임페리움에 의해 사람이 어떤 군주=국가에 충성해야 할지를 정한 양시양페

5) 국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탈을 제한하는 나라가 많으며, 단일국적자의 국적포기는 무국적 방지 차원에서 금지하는 경향이 있다.

6) 매년 4백만 이상이 출생하는 미국에서 2007년 귀화자 총수는 66만여 명, 가장 귀화가 많았던 1996년에는 110만 명이었다(Rytina and Caldera, 2007). 연간 거의 5백만이 출생하는 유럽연합(EU)에서는 매년 평균 73만 명이 귀화한다. “Romania’s Proposal to Naturalize 1 Million Moldovans Worries the EU,” *Turkish Weekly*, 19 April 2009.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생과 귀화의 건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7) 브루베이커는 프랑스와 독일의 시민권제도를 정체성 관념의 두 유형에 대응시켜 이분화한 바 있으나, 후에는 민족주의를 시민적 유형과 종족적 유형으로 나누는 마니교적 이분법을 맹렬히 성토했다(Brubaker, 1992; 1998).

짐의 원리를 부정하고 프랑스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를 프랑스인으로 정의하는 ‘인민주의적’ 원리를 택했다(Weil, 2001: 52-58).⁸⁾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는 상호배타적으로 대립하는 원리가 아니다. 출생지주의를 택하는 나라도 해외에서 출생하는 국민의 자녀에게 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을 부여한다.⁹⁾ 즉 혈통은 국민 지위를 규정하는 가장 주된 근거이다. 혈통에 의해 지위를 정하는 것이 전근대적으로 들리지만 부여의 대상이 국적일 때 그것은 면대면(面對面)의 사회가 아닌, 익명의 거대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 개개인의 생물학적 뿌리를 추적하는 생명권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의 사정, 그리고 조상과 자손까지를 알고 기록하는 합리적 행정, 고도의 통치성에 기반하는 근대의 산물이다.

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을 부여한다고 할 때 문제는 누가 혈통을 물려주는 최초의 국민인가이다. 국가인민(Staatsvolk)은 임의적 결사체가 아닌 역사적 구성물이다. 그것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 동일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고 스스로를 상상하는 집단으로부터 창출된다. 따라서 민족은 국민됨의 기초이다. 한 영토 위에서 동일한 권력체의 지배를 받고 그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민과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는 집단으로서 민족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에서 두 집단은 서로를 매개해왔다.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국민=시민의 공동체는 조직화 단위의 경계짓기를 정당화해야 하는바 정당화는 대개 민족의 이름으로 수행된다. 개인은 전(前)정치적(Pre-Political) 집단으로 상상되는 민족에 속함으로써 국민의 자격을 취득한다. 민족소속을 뜻하는 Nationality를 국적(Staatsangehörigkeit)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는 어법은 이로부터 유래한다. 반면 민족은 전정치적이라는 허구적 믿음과는 달리 국가에 의해 호명됨으로써 비로소 경계를 가진다. 개인은 민족에 속함으로써 국가에 속하지만 그가 민족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라는 패러독스가 빚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을 정하는 데에서 패러독스는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국적법’은 출생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8) 이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강력한 민족화(Nationalizing) 조치들을 수반했다. 신원등록시 프랑스식 이름만을 사용하게 하는 등.

9) 물론 국적의 대물림을 어떤 조건하에, 어느 세대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나라에 따라 다르며, 그 차이는 영토와 인민 중 어디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느냐에 의거한다.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을 부로 하여 태어난 사람을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이 법률 조문의 배후에는 대한민국은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 그 대한민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단절 없이 존재해온 한민족의 국가를 통칭한다는 전제가 있었다.¹⁰⁾ 이러한 법률기초자의 생각이 문자 그대로 계승되지는 않았다. 1997년 ‘국적법’ 개정안 작성을 주도한 석동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미묘하고도 어려운 문제”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개정안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948년 제헌헌법의 제정과 정부수립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새로이 탄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910년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국가의 범통성을 가지고 존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학문적으로나 국민의 일반 인식으로 반드시 견해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1948년 이전의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그렇다면 당시의 국호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애매하다. 따라서 정부수립 전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의를 조문화하는 문제는 이러한 제반 문제에 관한 학술적 정리가 선행된 이후에 비로소 무리없이 가능하다고 본다(석동현, 1997: 24).

법원도 1948년 ‘국적법’ 기초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 1948년 제헌 및 정부수립 전에 출생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유권해석한 첫 판결은 1996년에야 내려졌다. 이영순이라는 이름의 북한 공민을 당사자로 한 이 사건에서 사법부는 1948년 5월에 조선과도입법위원회가 제정한 ‘국적에

10) 1948년 국적법 제정 당시 이인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취지를 설명했다. “... 우리가 결국 8·15 이전에 ...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정신적·법률적으로 국적을 가졌다. 이렇게 보아서 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정인섭, 1988: 661-662에서 재인용).

관한 임시조례’(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를 원용했다. 이 법령에서는 “조선인을 부로 하여 출생한 자”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규정했다(제2조). 사법부논이에 의해 조선국적을 가진 자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발효와 함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석했다.¹¹⁾

1948년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든 조선국적을 가졌든 여전히 남는 문제는 누가 그런 사람인가이다. 이는 1963년에 처음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¹²⁾ 동법 제2조에서는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써 본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를 공민으로 규정했다. 그런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법’,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의 기초자들은 1948년 이전의 대한민국국적 또는 조선국적을 갖는 사람의 범위가 자명하다고 믿었다. 새 공화국의 국민 또는 공민의 원천은 한민족 또는 조선민족이었고, 그것은 대한제국의 신민(臣民)인 자와 그 직계비속이라는 인적 범위와 일치한다. 문제는 개인이 그러한 인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그를 새 공화국의 국민으로 등록시키는 것이다. 혁명 후의 프랑스가 그 이전 시대에 가톨릭 교구별로 작성한 사람 명부에 의존해 최초 국민의 신원을 기록한 것처럼(Noiriel, 2001), 전통시대의 사람 명부가 최초 국민의 신원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으로 쓰이는 것은 당연히 기대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한국은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와 기록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은 신민을 파악하는 데 철저하지 못했다. “2천만 민족, 3천리 강산, 4천년 역사”라는 인민의 은유적 자기묘사가 무색하게 1906년까지만 해도 호구조사로써 파악한 인구는 580만이 채 되지 않았다(서호철, 2007: 제2장). 인민의 막연한 상상이 국가의 공식적 인지(認知)에 비해 실재에 더 가까웠다는 점은 일제에 의해 통치화된(Governmentalized) 국가의 시선이 누락된 인구를 포착함으로써 확인되었다. 1906-1907년 일본인 경무고문(警務顧問) 임시호구조사 결과 인구는 990만으로 파악되었고, 1909-1910년의 민적실사(民籍實査)는

11)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김명기는 법원이 조선국적을 가지던 자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1948년에 세워진 신생국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다(김명기, 1997: 186-205).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이 대한민국 국적법과 달리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로서 노영돈(1997: 53-57); 이장희(1998: 58, 62); 손희두(1997: 56, 61). 최초 국민이 누구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으므로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견해로서 정인설(1998: 246-247).

1,300만의 인구를 기록했다(서호철, 2007: 제3장; 박명규·서호철, 2003: 제4장). 이 계량화되고 제도화된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1909년 민적법에 의해 편제된 민족, 1923년 그것을 계승한 조선호적에 기록되었다.

일제하의 호적은 다민족의 제국신민을 귀속적 집단범주로 분류하는, 일종의 국내 민족소속(*Internal Nationality*)의 성문화였다. 내지(內地)와 외지(外地)가 다른 호적으로 차별화되고 조선과 대만 등 서로 다른 외지의 신민을 별개의 호적에 기재했기 때문이다. 호적으로 차별화된 이 지위는 1932년 이래 소비에트연방이 성문화했던 민족소속(*Natsional'nost'*)처럼 본인이 선택하지 못하고 물려받는 것이었지만, 소비에트연방에서는 적어도 최초로 입적할 때에는 선택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일제하 호적에서는 입적 자체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¹³⁾ 그리고 한번 입적되면 다른 호적에 등재된 가부장적 가족에 편입됨으로써만 다른 호적으로의 이동이 가능했다. 피 지배 세계에 대한 일제의 ‘전망과 구획(*Vision and Division*)’, 이를 쫓아 개인의 신원을 파악, 기록하고 구분된 집단에 배속하는 통치합리성은 모딜리아니의 인물화에서 보이는 뚜렷한 윤곽처럼 제도적으로 경계지어진 종족집단을 창출했다.¹⁴⁾ 지속적 조사와 인구 증가의 결과 1944년 일제가 마지막으로 행한 국세조사(國勢調査)에서는 2,500만의 인구가 보고되었다. 대한민국은 이 집단을 최초 국민으로 물려받았다. 단절 없는 주권의 역사를 전제로 하는 1948년 국적법이 국민으로 규정한 사람이 식민지적 통치성에 의해 그 존재를 인증 받아야 했음은 아이러니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일제가 만든 호적에의 등재가 최초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또는 1948년 이전의 조선국적의 필요조건이라고 공식 선언하지는 않는다. 즉 민족이나 조선호적에의 기재는 한민족 성원임을 나타내는 표지(標識)일 뿐 한민족 성원이라는 사실이 그로부터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무호적(無戶籍) 독립운동가를 무국적자나 외국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서 예시된다. 일제시대에 해외로 망명하여 1948년 국적법 발효 전에 사망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독립운동가를 무국적자 또는 외국인으로 가정하고 이들에게 대한민국국적을 찾아주자는 취지의 법률안 3개가 2005년 8월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된 검토의견은 그러한 사람의 국적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13) 소비에트연방의 내부 민족소속에 대해서는 브루베이커(Brubaker, 1996: chap. 2) 참조.

14) 이러한 상태를 코코시카(Kokoschka)의 그림과 대조되는 모딜리아니(Modigliani)의 그림에 비유한 겔너(Gellner, 1983: 139-140) 참조.

무국적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일제시대 호적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일용 무국적자가 되나 호적은 국적의 득실 등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일제시대 조선인을 부로 하여 출생하였다면 앞에서 살펴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하여 미군정하의 조선의 국적을 가지므로 우리 국민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임. 즉, 1900년 대한제국 시대에 개정된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제2조에 의하면 특별한 허가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적이탈은 허용되지 않고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대한민국국적 이탈은 1948. 12. 20. 국적법 시행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조선인으로서 일제시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외국국적 취득은 효력이 없음.

또한 법무부의 실무상으로도 일제시대 외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음.

결론적으로, 3개 법안이 새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국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독립유공자는 의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¹⁵⁾ 그들은 일제가 만든 호적에 기록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선국적자일 뿐만 아니라 설사 외국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조선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가? 이상의 원칙은 독립운동가가 아닌 일반인의 국적 문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호적에의 등재가 조선국적 또는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인정받는 데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는 점은 법제와 행정의 모든 층위에서 타당한가?

15)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30, 2005. 8. 19 임인배의원 대표발의;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67, 2005. 8. 24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무국적사망 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527, 2005. 8. 30 신기남의원 대표발의. 이 중 임인배의원 대표발의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국적 또는 외국국적 상태로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순국선열”만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고,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기여한 조선인으로서 일제 때 무국적 상태로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비해 신기남의원 대표발의 ‘무국적사망 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무국적 또는 외국국적 보유 상태로 사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도록 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처럼 세 법안은 다소의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그 취지와 바탕을 이루는 가정은 동일하다. 2005년 11월 3개 법안 각각에 대한 법사위 박기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Ⅲ. 동포의 법적-행정적 창출과 범주화

역사적인 한민족 정치공동체의 성원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위의 해석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근거와 경위는 무엇인가?

1.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가 시사하듯이 대한제국은 신민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았다.¹⁶⁾ 상기 법사위 검토보고는 한민족의 국가의 단절 없는 계속성을 전제로 하는 국적법 기초자들의 입법의도를 존중하여 일제시대의 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제가 부과한 법제에 의거하더라도 한인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다.¹⁷⁾ 주지하다시피 일제는 제국에 편입된 피지배 인민을 일본국적자로 취급하면서도, 대만 및 가라후토(樺太)와는 달리 조선에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 국적법에 의하면 “자기의 지망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 망명하여 현지 국적을 취득한 한인에 대한 대인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제는 한인이 일본국적자가 된 것은 국적법의 적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병합의 효과에 의해서, 그리고 관습과 조리(條理)에 의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했다(정인섭, 1988: 653; 江川英文·山田籙一·早田芳朗, 1989: 191). 이처럼 대한제국의 법제에 따르든 일제의 법제에 따르든 한인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일제시대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여전히 해방 후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러나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태도는 이와 달랐다. 동 조례 제5조는 “외국의

16) 동 법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本國 政府의 特准除籍을 經지 아니하고 外國에 入籍하므로 籍托한 者는 既遂 未遂를 勿論하고 明律 賊盜篇 謀叛條에 照하여 處斷할 事.” 정인섭(1988: 650), 노영돈(1997: 60) 및 법사위 박기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각주 10. 이 법령은 1898년 공포되었고 1900년 2회 개정되었는데 처벌 조항은 제2차 개정시 추가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국적을 취득한 후 귀환한 한인의 치외법권 주장을 일축하고, 외국 귀화를 통한 국적이탈이 불가능함을 각국 정부에 통보했다(정인섭, 1988: 650-651).

17) 검토보고서에서는 “일제의 침략조약은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국제법상 무효이고, 1965.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해 한일합방조약 등은 무효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가로서 존속하였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1948. 7. 국가가 새로이 창설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가진 국가(정부)가 출범한 것”이라 갈파했다. 여기에서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서 조선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 조례를 사법부가 원용한 것이 국가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될 것을 우려했는지 “1948. 7. 이전에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명칭을 조선국적자로 보는 것에 불과함”이라 부언했다.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1945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여 외국의 국적을 얻거나 일본 호적에 편입되면 일단 조선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했다.¹⁸⁾ 정부수립 후 법원도 국적의 상실을 인정했다. 상기 법사위 검토보고에서는 1948년 국적법 시행 후부터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1954년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원용했지만, 법원은 1948년 이래 대한민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국적의 취득 시점이 일제시대라 할지라도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¹⁹⁾

그렇지만 재미한인의 대부분이 1960년대 이후 이주한 사람들이고 소수의 해방 전 이주자들은 한국의 법해석이나 집행과 관련해 문제가 된 일이 적었기 때문에 해방 전 해외로 떠난 한인의 국적 문제에 대해 법원과 행정부는 일관되고 명확한 취급 원칙을 정할 기회를 결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재중·재CIS 한인과의 재결합이 현실화되면서 이들의 국적 문제를 취급할 실무상의 원칙이 절실했다. 그런 원칙이 하루아침에 정립되어 실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는 없었다.

재중·재소한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다. 입국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목적에 제한되었고,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입국해야 했다. 1988년까지 5,600여명이 입국했는데 대부분은 재중한인으로서, 1981년 제정한 ‘한·중공간이산가족재회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고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이들이 거주국의 여권에 입국사증(비자)을 받아 입국하지 못하고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했던 것은 당해국이 미수교국이어서 정부가 그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절차는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을 천명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 이후 수정되었다. 즉 정부는 기존의 ‘이산가족재회사무처리규정’을 폐지하고 여행증명서 대신 거주국의 여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입국사증을 발급했다. 다만 북한적을 가진 사람

18) 한편 제헌의회 선거를 위한 국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에서는 선거권자인 국민의 자격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요했다: i) 조선에 호적을 가진 자, ii) 조선인 양친 사이에 출생한 자, iii) 조선인을 부모 하여 출생한 자로서 타국에 국적 또는 시민권이 없는 자(정인섭, 1988: 666-667).

19) 1925년 자진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으로 취급된다는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89 판결. 1905년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의 자(子)로서 1910년 하와이에서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판례(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89 판결)가 있으나 이는 출생에 의한 외국국적 취득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구별된다. 두 판례는 정인섭 엮음(2005: 25-26, 45-46)에 소개되어 있다.

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행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는 재중 조선족과 재소 고려인을 북한인과는 달리 외국인으로 취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영주귀국자의 국적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드러났다.²⁰⁾

정부는 1989년 1월 독립운동가 김동삼 선생의 유족이 영구히 귀국해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독립운동가 유족의 영주귀국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법무부는 동년 5월 ‘공산권거주동포국적처리방안’을 제정하여 영주귀국자의 국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때 법무부의 방침은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이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적법상의 국적회복 또는 귀화가 아닌, 국적판정이라는 절차를 법무부 예규에 의해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영주귀국자의 국민 지위를 인정했다. 국적판정의 결과 대한민국국적을 인정받으면 곧바로 호적에 취적 또는 구(舊)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호적 사무도 정비했다.

이러한 실무에 의해 1989년 말까지 290명이 영주귀국하자 재중한인사회에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민원이 점증했다. 정부는 1990년 6월 외무부 예규로 ‘독립유공자영주귀국지침’을 제정하여 영주귀국 절차를 엄격히 했다. 이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신청을 접수하고 국가보훈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외무부에 신청하면 외부부장관은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와 협의의 거쳐 선별적으로 영주귀국을 허가한다는 것이었다. 영주귀국이 허가되면 법무부장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해 국적판정을 하도록 되었다.

한편 계속되는 영주귀국 희망 민원에 직면한 외무부는 1995년 5월 ‘중국동포영주귀국허가지침’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 외에 일반 국가유공자 및 후손, 국내 존·비속 거주자, 그에 더하여 1988년까지 ‘한중이산가족재회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국내에 잔류한 사람에 대해서도 영주귀국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²¹⁾ 그에 따라 1996년 12월까지 영주귀국자는 총 355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도 추진되어 1992년에서 1996년 사이 199명의 사할린 1세가 귀국, 정착했다(정근식·염미경, 1999: 254).²²⁾

20) 정부의 실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의 진술 및 내부자료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처의 인용을 생략한다.

21) 지침의 명칭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다소의 불일치가 있다. 정부의 내부 보고서 중에는 1990년의 ‘독립유공자영주귀국지침’을 ‘중국동포영주귀국허가지침’이라 칭하고 1995년의 지침을 이 지침을 개정한 것처럼 서술한 것도 있다.

22) 1930년대 후반에서 2차 대전 종전까지 일제의 전시노동력동원 차원에서 송출된 사할린 한인은 전후에 개별적으로 소비에트연방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소비에트 공민의 자격을 가지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해당 부처의 예규에 의해 이루어진 영주귀국 및 국적판정의 실무는 디아스포라, 특히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귀환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취지도 없지 않았으나 실무적인 이유가 컸다. 만약 이들이 한국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면 국적법에 의해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해야 할 터인데 그럴 경우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 거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될 터였다. 그런데 당시 중국국적을 이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재중한인의 입국 압력은 영주귀국제도의 지속을 어렵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해외로 이주한 한인에게 영주귀국은 국적을 인정받는 유일한 루트였다. 영주귀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법상의 국적회복이나 귀화도 허가받을 수 없었다.²³⁾ 재중·재CIS 한인이 의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하여, 선별된 극소수에게 국적 취득이 아닌 국적판정을 받게 하면서도 나머지 250만 명에게는 국적판정은 물론 외국인으로서는 국적 취득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모순이었다. 남은 사람들은 55세 이상으로 제한된 친인척 초청 방문과 산업연수생 외에 입국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 입국 경로의 폐쇄 때문에 국적을 주장하는 동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들이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은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1997년 정부는 소위 영주귀국허가전치주의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당시의 절차가 수교국 중에도 특정국의 동포에 대해서만 영주귀국허가를 허용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반면 그 특정국 동포에 대해서도 국적 취득의 기회를 차단하여 반한(反韓)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행정쟁송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될 때 적법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 재중한인이 계속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일단 영주귀국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이를 확대 적용하여 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했으나 결국은 그간의 실무를 대폭 수정하는 쪽을 택했다.²⁴⁾ 외무부의 ‘중국동포영주귀국허가지침’은 폐지되고 1997년 12월

못했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재소한인과 사정이 판이했다.

23) 유일한 예외로서 국민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만이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거주국에서 혼인 절차를 경료한 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했다. 혼인빙자 불법입국을 막기 위함이었다.

24) 법무부는 1992년 영주귀국허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가 외무부와 안기부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제정된 법무부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국적판정제도는 동년 개정된 국적법에 반영되었으나, 이는 더 이상 중국이나 CIS 출신자를 위해 활용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과 일부 귀환 사할린 한인을 위한 절차가 되었다.

이로써 재중·재CIS 한인의 국적 문제는 분기점을 맞았다.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중한인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중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그 날 전에 출생한 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을, 그 날 이후에 출생한 자는 귀화를 해야 했다. 이는 놀라운 의제(擬制)이다. 재중한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만주사변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동북지역 거주 한인 전체의 1할을 넘지 않았다(노영돈, 1999: 85). 한인의 대부분이 중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은 동북3성을 중국공산당이 접수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주민들을 편입한 1945년에서 1949년 중 언제였을 것이다. 게다가 많은 한인은 1957년경까지 북한과의 이중국적 상태에 있었다. 이들의 중국국적 취득이 자발적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Lee, 1999: chap. 3; 이진영, 2004). 재CIS 고려인의 다수는 해방 전에 이미 소비에트연방 공민권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에서 본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의 입장을 따른다면 당시에는 국적이탈이나 상실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들은 재중 조선족과는 달리 대한민국국적을 계속 보유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실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무부는 “정부수립 당시 국내외에 있던 모든 조선인은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 하면서도 “해방 이전에 중국 및 구소련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동포들은 외국국적동포 1세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현재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소련 동포도 일률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적변경 시점이 언제인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인지 해방된 때인지는 분명히 하지 않는다.²⁵⁾ 다만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는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시적(時的) 기준을 적용하여 그 전에 출생한 자는 국적회복을, 그 이후 출생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호적(제적)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국적판정에 회부한다.²⁶⁾

25) ‘방문취업(H-2) 사증발급 관련 지침’, 2009. 12. 법무부가 원용하는 현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는 후술할 2001년 재외동포법 일부 조항에 대한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전술한 이영순 사건에 대한 판결로 보인다.

26)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ttSeq=&categoryId=1&parentId=150&catSeq=211&showMenuId=118).

관념적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재중·재CIS 한인은 이제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국적이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고 국적이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이나 귀화도 할 수 없는 기묘한 상태에 있던 이들은 지금은 국적이 없지만 과거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상태에 도달했다.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는 실제로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허가를 얻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다.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은 허가대상자를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그 친족, 국내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 1980년대 입국해 체류 중인 자, 인도적 고려가 요구되고 친척 등의 도움으로 생계 등 재정능력이 보장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자산 또는 기능이나 자격, 일정 보수를 받는 직업과 함께 내국인의 재정보증 및 신병인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국적법이 해외에서도 국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 이들은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해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영주귀국허가지침’이 소송으로 다투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폐지하고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으로 이를 대체했지만 실제로 쟁송에 직면한 것은 후자였다.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던 2003년 저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선족 한인의 대규모 국적회복 신청이 접수거부되자 신청인 중 일부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자기들이 자진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는 이중국적 상태에 있으나 한중수교 이후 정부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이라는 차별적 내부규정을 통해 국적회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국동포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국적 상태가 아니고, 설사 이중국적 상태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해소할 입법이나 조약체결의 의무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기회가 없지 않으며,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은 법무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5년 6월 이 지침이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바뀌어 더 이상 다룰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시했다.²⁷⁾

27)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마806 결정. 이 결정에서 현재는 정부가 1992년 한중수교와 더불어 중국동포를 외국인으로 취급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법무부의 실무상 중국동포를 확정적으로 외국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을 대체한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모든 외국국적동포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 요소가 덜하며, 재산·직업 요건에 대한 규정도 삭제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상 다른 나라 거주자와 달리 중국 거주자는 현지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며, 심사의 기준도 까다롭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중국 출신, 특히 조선족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표 1>과 <표 2>가 보여준다.

〈표 1〉 연도별 국적회복 건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적회복	926	911	1,748	2,001	4,675	648	1,783	3,740	1,712
중국동포 국적회복	789	650	1,519	1,761	4,338	507	1,514	3,289	1,268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연도.

〈표 2〉 연도별 귀화신청 및 귀화허가 건수

연도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귀화신청				638	4,066	3,709	6,696	10,859	19,565				
귀화허가	93	193	156	232	724	2,972	5,986	7,261	12,299	7,477	8,536	11,518	25,044
중국출신 귀화허가					602	2,694	4,627	5,682	10,543	6,649	7,364	9,256	19,432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연도.

2. 동포의 법적·행정적 창출과 계서화

위의 과정을 거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동포는 법적, 행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 것인가?

1) 동포의 정의

1990년대의 법적 변화 중 하나는 정서적 유대를 상징하는 ‘동포(同胞)’라는 용어가 법에 의해 전유(專有)되었다는 사실이다. 유교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박애의 표현으로 사용되던 동포가 같은 종족에 속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은 일제 시대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공담론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뜻하는 용어로서 ‘교포(僑胞)’ 또는 ‘교민’이 전(前)정치적 종족을 뜻하는 동포보다 더 널리 쓰

였으며, 이는 1960년대 이후 미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대한민국과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던 재일한인을 한인 디아스포라의 중심에 두는 관념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들이 바다 건너에 있다는 지리적 관념은 ‘해외’교포라는 용어를 보편화했다. 1990년대에 들어 이러한 용어 사용은 크게 수정되었다. 해외교포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재외동포’가 공공담론을 장식하게 된 것이다.²⁸⁾ 재외동포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통치화된 시선에 포섭된 인적 범위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재외국민만을 통계로써 포착하던 외무부가 1991년부터 재외한인 전체를 통계에 포함시키고, 현황 분석의 대상을 일본·미주·구주에서 중국 및 구소련으로 확대한 데에서 드러난다. 이후 김영삼 정부 아래 재외동포는 정부의 공식적 개념으로 확립되었다. 1993년 집권과 더불어 신교포정책을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1990년대 초 구공산권 거주 한인을 정책 대상에 편입한 데 병행하여, 교포 또는 교민과 병용되기 시작한 동포라는 용어를 정부 행정의 유일한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1995년 12월 발표된 ‘재외동포사회활성화지원방안’은 재외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국가의 인적 경계를 넘는 ‘초국가적’ 동포 개념을 공식화한 것은 재미한인의 이중국적 허용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국민의 지위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들이 국내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재외동포사회활성화지원방안’은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와 경제활동의 편의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재외동포에 대한 문화와 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후자는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여기에서는 재외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는 자”로 정의했다. 이러한 혈통주의적 정의는 같은 해 경쟁적으로 제출된 2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에도 반복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를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선조를 기준으로 1/4이상의 혈통을 가진 자”로 정의했다.²⁹⁾

‘재외동포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일 때 정권이 바뀌어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고, ‘재외동포사회활성화지원방안’이 약속한 국내 체류와 경제활동의 편의는 금융 위기를 맞아 재외동포를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김대중 정부가 고안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명 재외동포법)에 의

28) 동포라는 용어의 변천과 등장에 대해서는 김재은(Kim, 2009) 참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이사장은 ‘해외’를 지리적인 견지에서만 이해하고 이를 ‘재외’로 대체한 것,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는 ‘교포’의 본래적, 문리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동포’로 대체한 것을 비판한다.

29) 재외동포기본법안, 의안번호 821, 1997. 11. 5 김원길의원 대표발의.

해 실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법률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외국국적동포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하여 입법예고했으나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수정해 제출, 통과되었다. 이어 대통령령(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은 외국국적동포를 다시 i)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ii)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부수립 이전 이주자 중 외국국적 취득 전 국적을 확인받지 못한 중국과 CIS 거주 한인을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 정의하는 소위 과거국적주의를 택한 결과 재·재CIS 한인들이 배제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배제의 효과는 법률 규정이 아닌, 시행령에 의한 것이며, 소위 혈통주의를 취했다 해도 동일한 시행령 조문에 의해 같은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앞에서 본대로, 대한민국의 국가인민이 창출되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과 한민족 공동체의 성원, 그리고 대한제국 신민 및 그 혈통적 후손은 동일한 것이 되었다. 즉 과거국민은 곧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인 것이다. 역으로 말해, 한국은 과거국적 만으로도 종족성원을 포섭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특수한 조건은 집단의 종족적 자기상상을 가부장적 법제로 제도화하고 세밀한 신원기록으로 객관화한 식민지적 통치성에 의해 조성되었다.

이 특수한 조건은 종족주의적 문법으로 초국가적 민족성원을 법제화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2001년 헝가리가 제정한 ‘인근국 거주 헝가리인에 관한 법률(Act on Hungarians Living in Neighbouring Countries)’은 혈연국(Kin-State)이 혈연외국인(Kin-Foreigners), 즉 자국적을 갖지 않는 민족성원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우대하는 법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기에 특히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다.³⁰⁾ 국경을 맞댄 6개국에 거주하면서 거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30) 이 법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루마니아와 분란이 야기되어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베니스위원회가 개입,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Venice Commission, 2001). 이 법률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재외동포법 개정을 앞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던 때였다. 따라서 헝가리 입법에 대한 논의는 순수한 학문적 관심 이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재외동포법에 비판적인 논자들은 재외동포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라 주장하고 있었다. 홍

종족적 마자르인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단기 취업허가, 복지, 교육 혜택을 부여한 이 법률은 특수한 지위 부여의 대상이 되는 혈연외국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1조 ① 이 법률은 헝가리 국민이 아닌 자로서 크로아티아공화국, 유고슬라비아연방,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또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면서 자가 헝가리 민족에 소속함을 선언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 a) 자발적 포기가 아닌 사유에 의해 헝가리 국적을 상실하였을 것
- b) 헝가리의 영구체류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

동 법률은 2003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영어번역본에서는 상기 “헝가리 민족에 소속함(of Hungarian Nationality, 원어로는 Magyar Nemzetiségűnek)”을 “헝가리 종족적 출신(of Hungarian Ethnic Origin)”으로 수정했다. 마자르어에서 민족소속을 나타내는 용어 Nemzetiség는 영어의 Nationality와 마찬가지로 민족소속을 뜻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근국의 마자르 소수민족성원에게 헝가리 국민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인상을 준다는 비판 때문이었다.³¹⁾ 아무튼 이 법률에서 취하는 ‘헝가리인(마자르)’의 정의는 종족성을 기준으로 한다. “민족에 소속함” 또는 “종족적 출신”은 동유럽의 민족소속 분류 체계가 대체로 그러하듯이 본인의 선언에 따른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자가 선언만으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마자르인이라는 인증이 필요하다. 동 법률은 인증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 i) 헝가리어 구사 능력 또는 ii) 거주국에서 마자르 민족성원임을 선언하는 자로 등록되었거나, 마자르 민족성원을 통합하는 거주국 소재 단체의 등록된 회원이거나, 거주국 소재 교회에 마자르 민족성원으로 등록되었을 것을 요한다(제19조 제3항 및 제20조 제2항). 인증의 요건은 원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격요건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응답하여 개정 법률에 규정되었다. 또 개정 전의 법률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거주국 소재 마자르인 단체의 추천을 요했는데 이것이 거주국 사회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개정 법률에서는 추천 요건을 삭제했다.

과거 합스부르크제국을 구성했던 나라가 종족성에 기초해 동포를 정의할 때 그

미룸게도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의 입법 사례를 학계에 처음 소개한 것은 재외동포법에 대한 대표적 비판론자인 정인섭(2003)이었다.

31) 흥미롭게도 영어번역본에서만 수정을 했을 뿐 헝가리 원문은 수정되지 않았다. 2003년 법 개정에서는 단기 취업허가와 거주국 현지에서 이익을 공여하는 내용의 몇 개 조항을 삭제했다.

것은 문화적 기준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동일혈통의 신화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이 도구적 동기에서 수혜자가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었다.³²⁾ 이에 비해 한국의 재외동포법은 종족성을 표현하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합의된 종족의 경계를 포착하고 있다. 반복하거니와, 이는 폐쇄적인 왕국에 속한 인구집단을 “전체와 하나(Omnes et Singulatim)”로 재구성해낸 식민지적 통치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현재와 과거를 관통해 민족과 국가의 성원을 동시에 확정한 한 민족국가의 특이한 경험을 보여준다.³³⁾ 종족의 경계가 합의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정체(政體, Polity)의 개별 구성원과 그들이 누리는 멤버십의 대물림을 물샐틈없이 기록하는 행정실무가 확보한 강고한 헤게모니를 뜻하는 것으로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설득력이 없지 않을 것이다.

2) 동포의 계서화

재외동포법이 과거국적의 개념을 가지고 종족의 합의된 경계를 포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단계 마지막에 가해진 조문의 수정에 의해 250만 재외한인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통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주지하듯이 2001년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받았다.³⁴⁾ 2013년 말로 결정된 개정시한을 앞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 끝에 법률은 결국 시한을 초과하여 개정되었다. 개정된 재외동포법과 그 시행령은 외국국적동포에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동포 지위의 대물림을 3대로, 즉 과거 국적자의 손자녀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법규에 의한 포섭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통한 배제는 지속되었다. 외국국적동포라 해도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출입국관리법규가 정하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이 단순노무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다발국가에서 오는 동포의 단순노무행위 종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증발급 심사 단계에 장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7년 말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 중 중국이나 CIS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이 시정된 것은 2008년 1월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지침’이 개정되어 일정

32)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로마(Roma, 집시를 뜻하는 공식 용어)가 마자르인임을 주장하면서 수혜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33) 통치성은 인구집단을 총체(Omnes)로 만듦과 동시에 그에 속한 사람의 개별주체성(Singulatim)을 확립한다(Foucault, 1981).

34)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99헌마494 결정.

직업 종사자와 일정 회수 이상 출입국한 사람에 한해 자격 부여가 가능하게 된 때 부터였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다국적기업 임직원,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상당 규모의 개인기업 대표, 언론사 임직원, 기자, 변호사, 대학교수, 회계사, 기술연구개발 종사자, 기타 전문직 종사자, 박사학위 취득자, 전문지식이나 숙련노동력을 요하는 D와 E형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이수한 자 등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7월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45,909명 중 1,731명이 ‘한국계 중국인’이었다.³⁵⁾

출입국관리법제는 전문지식 또는 숙련노동력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하는 것에 병행하여, 미숙련노동력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자격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갔다. 산업연수(D-3)와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에 의함)처럼 여러 나라의 외국인노동자 중 쿼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동포성’에 기초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첫 형태는 방문동거체류자격(F-1)을 변형해 적용하는 취업관리제였다(F-1-4). 40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 하여금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으로 2002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아직 혈연외국인을 일반 외국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취업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일반 외국인에 타당한 것—2004년 이후에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E-9)—으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더욱 진화하여 동포만이 누리는 체류자격을 낳은 것은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에 이르러서였다. 일부 제조업까지 포함 32개 업종에서 최장 5년까지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체류자격(H-2)은 이제 재중한인의 국내 진입의 가장 중요한 루트가 된 동시에 수입된 외국인노동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2009년 7월 현재 고용허가제에 의해 수입된 노동자가 18만 명임에 비해 방문취업자는 31만 명에 달했다.³⁶⁾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종족적 귀환이주(Ethnic Return Migration)는 몇 개의 차등적인 범주로 나뉜 계서화된 민족(Hierarchical Nationhood)을 탄생시켰다.³⁷⁾ 이것의 법제화는 두 개의 에스니즌십(Ethnizenship)을 작출(作出)했다(Seol and Skrentny,

3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09.7.

3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09.7.

37) 설동훈과 스크렌트니(Seol and Skrentny, 2009)는 계서화된 민족이 다소 특수한 현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계서화가 발생하는 배경과 양상은 각 민족에 고유하지만 민족이건 국가건 그 성원 사이에서 차등적인 법적 지위범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주권, 인민과 영토의 모순을 내장하는 국민국가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Lee, 2010).

2009).³⁸⁾ 재외동포체류자격(F-4)과 방문취업자격(H-2)이 그것이다. 이 둘은 전문지식 및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으로 분절된(Segmented) 이주노동시장의 구조에 조응한다.

그렇다면 민족=대한제국의 신민, 민족에의 소속=과거국적으로부터 분화된 여러 지위—국적과 상하급 에스니즌십—중 하나를 얻기 위한 기술적,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3. 서면실재(書面實在)와 생물학적 진실

앞에서는 식민지적 통치성에 의해 민족=국민의 뚜렷한 경계가 확정되었음을 강조했다. 집단의 종족적 자기상상을 가부장적 법제로 제도화하고 세밀한 신원기록으로 객관화하는 행정실무와 그에 익숙해진 인민의 일상은 민족에의 소속은 자명하고 국가는 민족의 무매개적 외화이며 민족과 국민은 일치한다는 믿음을 가져다주었다. 공산권 디아스포라와의 재상봉은 그러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동포와의 만남이 초래하는 혼란스러움, 레토릭과 현실의 불일치, 법제 내부의 불일치, 법제와 실무의 불일치로 인한 의문만은 아니었다. 누가 한인인가, 누가 귀환할 동포인가, 누가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판단해야 하는 현실은 한인의 정체(正體)가 자명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법과 행정, 관료의 실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불편한 인식을 가져다주었다.

민족은 평등하고 동질적인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부터, 입국 자체가 어려운 후진국 국적자에 이르기까지 중심에서 바깥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구조를 띤, 불평등한 지위범주로 계층화된 집단이 되었다. 동심원의 바깥에서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갖추고 보여주고 입증해야 한다. 밖에서 안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정도를 달리하여 요구되는 ‘연고’이다. 특히 요구되는 연고는 국민과의 혈연관계이다.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서부터 방문취업자격을 얻는 데 이르기까지 혈연적 연고는 일관되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는 민족=국민 지위의 문서화가 가부장적 가족을 단위로 형성된 혈연의 연결망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그런 연결망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민족의 성원이자 과거 또는 현재의 국민임을 주장하는 첩경이다. 따라서 호적(제적)등본은 어느 경우에도 필요로 되는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또 신원 입증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38) 에스니즌십은 헝가리를 비롯해 국민이 아닌 종족성원에게 일반 외국인과 다른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동유럽의 사례에 착안하여 바우빅이 고안한 개념이다(Bauböck, 2007: 2396).

김재은이 지적하듯이 호적은 “남한이 유일하고 정당한 승계자임을 주장하는 역사적인 한민족 정체(政體, Polity)에의 확실한 멤버십을 확립”하는 으뜸의 서면실재(Papereality)이다(Kim, 2009). 무호적 독립운동가의 국적 문제에서 보듯이 호적이 국적, 과거국적 또는 민족에의 소속을 창설하는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다.³⁹⁾ 그렇지만 호적은 기록되지 않은 것의 부존재에 대해 상당한 추정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록된 것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따라서 호적, 작금의 공식어로 말하자면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역사적인 한민족 정체에의 확실한 멤버십”을 가지는 사람임을 부인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민사신분과 그 변동을 물샐틈없이 파악하고 기록한 일체의 통치화된 행정의 결과물을 물려받았다 해도 한반도의 반쪽에 있는 기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민족성원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북한에 있는 구호적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특정인이 민족성원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는 무수하다. 호적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신원을 입증해야 하는데,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혈연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된다. 공산권 거주 한인과 재회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된 통로는 친척의 초청이었다. 취업관리제를 통한 조선족노동력 수입을 방문동거의 변형된 형태로 운영한 것도 민족은 혈연의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념에 기대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었다.⁴⁰⁾ 남한에 호적이 없는 북한 출신의 재외한인은 연고를 주장할 친척 또한 없는 경우 민족적 ‘혈통’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

호적에 기록이 있거나 친족의 초청이 있으면 방문취업제로 입국이 가능하다. 방문취업제 실무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연고동포’라 하고 국내 거주 국민과의 연고를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을 ‘무연고동포’라 부른다. 무연고동포는 국가별로 할당된 쿼터의 범위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다.⁴¹⁾ 무연고동포로서 방문취업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

39) 노영돈은 정인섭이 호적이 곧 국적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으나, 정인섭은 최초 대한민국 국민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호적이 가졌던 중요한 기능을 강조했을 뿐이다(노영돈, 1997: 55-56; 정인섭, 1998: 246).

40) 국민과의 혈연을 바탕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것은 혼한 현상으로서 시민적 국민주의와 대립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특징이라고만 말해서는 안된다. 국민과의 혈연 또는 종족적 연고를 근거로 특정 집단을 이민법적으로 우대하는 사례들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Joppke (2005)참조

41) 2009년에는 총 3만 명이 배정되어 중국에 25,503명이 할당되고 나머지는 CIS 거주 한인에 공화국별로 차등 배분되었다. 법무부장관 고시, 2009.4.13.

류”와 한국어시험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로는 중국의 여권, 거민증, 호구부, 우즈베키스탄의 구여권, 여권, 출생증명서, 러시아의 여권, 국내여권,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카자흐스탄의 구여권, 여권, 신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이 있다.⁴²⁾ 국적국들이 원초주의적 민족관념에 따라 민족소속을 등록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분증 기타 신원에 관한 문서에 의해 한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헝가리의 예에서 보듯이, 타국에 있는 혈연소수민족(Kin-Minorities)을 접근하는 구공산권 국가의 정책과 법제도 그런 식의 민족등록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민족정체성의 제도화는 다른 나라의 통치성에 좌우되고 서로의 통치성에 의존하는 상호통치성(Inter-Governmentality) 또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통치성을 조건으로 한다.

거주국이 파악한 신원과 민족소속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 태도는 상급의 에스니즘, 즉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본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호적(제적)등본이 필요하나 이를 결여한 사람은 앞에서 본 국적국의 공적 서류로서 동포임을 소명할 수 있다.⁴³⁾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가? 한국국적을 갖지 않는 재외한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으로서 국적법 제7조에 의해 특별귀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일정기간 거주함을 요하지 않고 생계유지능력 등 귀화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법 제9조에 의해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전술한대로 재중 조선족은 1949년 10월 1일 전에 출생한 경우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적회복 역시 국내 거주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법 제6조에 따라 간이귀화하는 경우로서 국민의 배우자가 된 결혼이주자와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던 자, 즉 동포 2세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요구되는 거주기간은 일반귀화에 비해 짧은 2년 또는 3년이지만 생계유지능력 등 일반귀화의 요건이 적용된다. 네 번째는 법 제5조에 의해 일반귀화하는 방식인데 부모도 한국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는 해외이주 3세대나 택할 만한 경로이다. 이 가운데 동포성이 전제가 되는 것은 국적회복과 과거국민의 자녀임에 기초한 간이귀화,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으로서 특별귀화하는 경우이다.

국적회복은 국가공동체의 과거 성원이었던 자의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42) ‘방문취업(H-2) 사증발급 관련 지침’ 별표 2 참조.

4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에서 가용. 인터넷; 2009.8.31 접속).

일반적으로 귀화에 비해 수월하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재중한인의 국적회복은 귀화와 차이가 그리 크지 않게 취급된다. 전술했듯이, 1997년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국적회복 신청자와 귀화 신청자 모두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지위를 가질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귀화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생계 유지능력을 소명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리고 그런 요건 자체가 없는 선진국 동포의 국적회복과 비교할 때 현저히 차별적이었다. 이 요건은 2005년에 제거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국적자와 달리 중국과 CIS 한인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을 반드시 입국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가 지속되고 있다.⁴⁴⁾

국적회복 신청자는 본인인, 간이귀화 신청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가장 확실한 서류는 호적(제적)등본이다. 호적 기록이 없다고 해서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련국의 공적 증서 또는 공증서도 제출할 수 있으나 방문취업이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때처럼 거주국에서 조선족 또는 고려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국적을 입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 출신의 경우 호구부, 상주인구등기표 등을 제출하지만 이는 동원해야 하는 입증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하다. 입증은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의 혈연, 중국의 가족과 한국의 가족이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접합점을 찾는 데 주안점이 있다. 가계도 또는 족보, 왕래한 편지, KBS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확인서, 친척과 함께 특히 조상의 묘지에서 찍은 사진 등이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⁴⁵⁾ 친족관계임을 보증한다는 친척의 인우보증서도 첨부 서류의 하나이다. 혈연이 증명되어야 하는 관계의 범위는 본인은 6촌, 부모 세대는 4촌이다.⁴⁶⁾ 매우 주목되는 것은 공인의료기관을 통한 유전자 감식이 활용된다는 점이다.⁴⁷⁾ 근래에는 접수 건수의 약 15-20%에서 유전자 감식결과가 활용되는데 주로 국내 연고가 희박해지는 동포 2, 3세의 연고를 입증하기 위함이라 한다.

44) 현재의 실무준칙인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국내 신청의 경우 적법하게 입국, 체류 중인 때에 한해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국외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은 담고 있지 않다. 업무처리지침에서 어떻게 규정하든 현재의 실무는 국외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국적법’과 그 시행령에 반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행정쟁송과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질 때 취약하다.

45) “국적회복 — 중국동포 회복,”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에서 가용. 인터넷; 2009.8.31 접속).

46) 2008년 2월 지침 개정으로 4촌에서 6촌으로 확대.

47)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유전자 감식에 대한 의존도는 특별귀화에서 더욱 크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이 국내에 재정착하는 초기의 경로는 영주귀국과 국적판정이었다. 이때에는 영주귀국자에 대한 예우와 독립운동가 귀환이 불리일으키는 민족주의적 정서 때문에 대상자의 신원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영주귀국 제도가 폐지되고 특별귀화가 이를 대체한 1997년을 전후하여 정부 당국이 중국의 신원 서류 위조 실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서류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특별귀화자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유족으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신원을 위조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았다.⁴⁸⁾ 법무부는 특별귀화 신청을 접수하면 국가보훈처에 후손여부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귀화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특별귀화에서 보훈처의 판단은 절대적이다. 보훈처는 중국기록전문가, 족보학자, 독립운동 연구자, 유전자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운동가후손확인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와 보훈처 공훈심사과는 출입국/국적 절차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중국측 문서를 심사한다. 개인별 존안자료에 해당하는 당안(檔案)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심사는 현지조사를 수반하기도 한다. 국가보훈처의 유전자 감식은 몇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7년 12월 보훈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검사가 가능한 모든 대상자에 대해 실시된다. 1년에 약 200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⁴⁹⁾

IV. 맺음말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때 일각에서는 재외동포법이 혈통이 아닌 과거국적을 기준으로 동포를 정의한 결과 많은 동포가 제외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혈통과 같은 모호한 기준으로 동포를 정의하고 우대하는 것은 국제규범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거국적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우선했다. 그러나 ‘혈통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혈통과 과거국적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경계짓는 과정이 혈통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48) 특별귀화는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면 세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반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대되는 유족은 손자녀 세대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49) 1건당 검사대상자는 2인 이상이다.

혈통에 의거한 것은 대한민국 정책결정자의 선택이 아니었다. 대한제국의 신민이 민족과 조선후적에 기록되고 일본제국 내의 민족소속 구분이 그렇게 문서화된 순간에 한민족의 경계는 뚜렷한 선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편입된 사람들의 지위가 대물림되고 그 변동이 기록됨으로써 민족이 재생산되었다. 대한민국 국가인민의 정당성을 민족의 정체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이었다. 일제에 의한 주권의 단절을 부정하면서도 그로부터 승계한 통치성을 매개로 하여 민족은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는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 국민이 만든 법제에 의해 민족의 경계가 소급적으로 승인되고 정체성과 공동체적 상상은 제도화된 실재가 되었다.

이러한 경계 획정은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하는 정치적이고 국제법적인 실재에 눈감았다. 처음에는 그 획정이 승인되기 전에 수백만이 해외로 떠나 외국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 또한 반영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약 2,500만 명이 추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했다. 그 중 1월에 달하는 재중·재 CIS 한인은 그들이 추상적으로 소속된 국가와 접촉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그 국가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리고 외국 귀화에 따른 국적상실을 규정한 국적법의 작용에 의해 이미 분리된, 그러나 탈영토화된(Deterritorialized) 민족의 성원으로 남아 있는 디아스포라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 디아스포라는 조건의 차이에 따라 계층화되었다.

국민이건 민족의 성원이건 그 신분을 확인하는 일은 2,500만의 추상적 국민과 접촉 없이 살아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도전이었다. 고도로 통치화된 식민지 지배권력이 작성한 세밀한 신원기록도 모두 손에 넣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그에 기록되지 못한 또는 기록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로부터 누락된 사람들에 대한 관찰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일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누락만을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기록되었어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은 많은 난점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국민과 상하급의 에스니즘, 그러한 자격을 결여한 디아스포라, 그 바깥에 있는 완전한 타자로 구분되는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또는 위치해야 하는가는 문서의 존부와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어느 위치를 주장하고 어느 위치로 이동하려는가에 따라 원용할 수 있는 문서는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 기준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의 혈연이었다. 주장하는 지위에 따라서는 서면실재화된 혈연을 생물학적 진실로 대체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민족의 멤버십이 어떻게 분류되고, 서호철(2008: 96-97)의 표현

대로 “카드와 코드에 봉안(奉安)”되었으며, 어떻게 주장, 입증, 인정되는지를 탐구의 과제로 삼았다. 종족적 민족주의로 특징지어지는, 그러나 단순화할 수 없는 한인의 삶이 가로놓인 다층적 실재를 보여주는 데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참고문헌

- 김정일. 2006. “[전문서평] 민족과 민족주의를 통해 본 한국 근현대사.” 《역사비평》 76: 500-517.
- 김명기. 1997.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법이론.” 《저스티스》 30(2): 186-205.
- 김성호. 2008. “헌법제정의 정치철학: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 42(3): 5-27.
- 노영돈. 1997.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41(2): 49-64.
- _____. 1999. “재중한인의 국적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4(2): 73-88.
- 데리다, 자크 [진태원 옮김]. 2004. “독립선언들.”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 박명규. 2008.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한국문화》 41: 245-262.
- _____. 서호철. 2003. 『식민권력과 통제: 조선총독부의 통제체계와 센서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호철. 2007.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8. “국민/민족 상상과 시민권의 차질, 차질로서의 자기정체성.” 《한국문화》 41: 85-112.
- 석동현. 1997. “국적법의 개정방향: 입법예고(안)의 해설.” 《서울국제법연구》 4(2): 1-27.
- 손희두. 1997. 『북한의 국적법』. 한국법제연구원.
- 이장희. 1998.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국 국적법의 개정방향 검토” 이장희 엮음.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이진영. 2004. “재중한인의 국적과 이중국적 관련 논쟁에 대하여.” 『재외한인연구와 국적문제』 (재외한인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1).
- 정근식·염미경. 1999.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9: 237-80.
- 정인섭. 1988. “법적 기준에서 본 한국인의 범위.” 임원택 교수 정년기념 『사회과학의 제

- 문제』. 법문사.
- _____. 1998.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43(2): 235-248.
- _____. 2003. “유럽의 해외동포 지원입법의 검토: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논의와 관련 하여.” 《국제법학회논총》 48(2): 189-217.
- _____. 엮음, 2005.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江川英文·山田繭一·早田芳朗. 1989. 『國籍法』. 東京: 有斐閣.

- Bauböck, Rainer. 2007. “Stakeholder Citizenship and Transna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A Normative Evaluation of External Voting.” *Fordham Law Review* 75: 2393-2447.
- Brubaker, Rogers.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baker, Rogers. 1996. *Nationalism Reframed: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New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ubaker, Rogers. 1998. “Myths and Misconception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The State of the Nation: Ernest Gellner and the Theory of Nationalism*, edited by John A. Ha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stles, Stephen. 2005. “Hierarchical Citizenship in a World of Unequal Nation-State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8(4): 689-692.
- Connor, Walker. 1994. *Ethnonationalism: The Quest for Understand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oucault, Michel. 1981. “Omnes et Singulatim: Towards a Criticism of ‘Political Reaso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 2, edited by Sterling M. McMurrin.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Joppke, Christian. 2005. *Selecting by Origin: Ethnic Migration in the Liberal Sta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Jaeun. 2009. “The Making and Unmaking of a ‘Transborder Nation’: South Korea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Theory and Society* 38: 133-64.
- Lee, Chulwoo. 2010.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0(2): 230-251.
- Lee, Jeanyoung. 1999.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Minority in Chin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Noiriel, Gérard. 2001. "The Identification of the Citizen: The Birth of Republican Civil Status in France." *Documenting Individual Identity*, edited by Jane Caplan and John Torpe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tina, Nancy and Selena Caldera. 2007. "Natural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2007." *Annual Flow Report*, July 2008,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147-174.
- Shin, Gi-Wook.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Venice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2001. *Report on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National Minorities by Their Kin-State*, CDL-INF (2001) 19.
- Weil, Patrick. 2001. "The History of French Nationality: A Lesson for Europe." *Towards a European Nationality: Citizenship,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 in the EU*, edited by Randall Hansen and Patrick Weil. Basingstoke: Palgrave.

(2010. 8. 4. 접수; 2010. 9. 15. 수정; 2010. 9. 23. 채택)

The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Classification, Boundary Delimitation and Membership Determination of Koreans

Chulwoo Lee
Yonsei Law School

This paper delineates how the two status categories of Koreans, namely citizenship and ethnizenship, have been institutionalized and how the identities of persons claiming those statuses are determined. Koreans are widely believed to have a sense of nationhood that is highly ethnic or blood-centered. Those who hold that belief refer to the fact that Korea confers citizenship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ius sanguinis* and that it grants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members of the ethnic diaspora. This paper stresses that the state's practice of treating an individual as a citizen or conferring a special status on a person by reason of ethnicity is not only the execution of a sovereign decision but also an outcome of the politics of governmentality. In this paper I trace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institutionalized, inquire into the question of who became the initial citizens of the Republic and on what grounds they were recognized as such, study how Koreans in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Korean citizenry, and find out how those who seek to be recognized as ethnizens, or "coethnics of foreign nationality," assert themselves as ethnic Koreans and prove who they are. The study brings to light the multiple realities lived by Koreans which are apparently characterized by practices of ethnic nationalism but which require a more nuanced approach than explaining away everything in those terms.

Key words: nationality, overseas Koreans, coethnics of foreign nationality, ethnic Koreans with Chinese nationality (Joseonjok), diaspora, ethnicity, naturalization, governmentality, biopower

연구논문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대응 양상과 실천적 함의*

김이선**

‘한국인 부모’를 전제로 구조화된 공식, 비공식 교육 제도 하에서 일반적인 한국인 부모와는 다른 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다. 특히, 개도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팽배한 환경 속에서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적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개도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어머니’라는 이유로 자녀교육을 전담해야 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개도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21명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교육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를 파악하고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 과제에 대응해나가는 양상을 포착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있어 장기적 차원의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언어 발달과 관련된 학업 성취 등 제한된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을 뿐 자녀교육과정에서 제기된 과제 해결 경험을 토대로 부모로서 역량과 자신감을 증진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역동성은 미약한 상황이다. 자녀교육과정을 둘러싼 다문화가족의 발전적 역동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보충하는데 집중한 기존 접근을 탈피해 자녀교육의 주체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위상을 인정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교육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한국인 아버지들이 자녀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제어: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 외국인 어머니, 한국인 아버지, 자녀교육

* 이 글은 김이선·정혜숙·이미화,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 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중 본인이 집필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yskim@kwdimail.re.kr.

I. 서론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소위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논의가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흔히 ‘다문화가족 자녀’로 개념화되는 국제결혼 가족 자녀는 핵심적 관심사로서 이에 대한 논의의 전개에는 관련 연구 성과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발표되고 있는 상당수의 연구 성과(조영달 외, 2006; 오성배, 2007; 조혜영·서덕희·권순희, 2008; 구효진·최진선, 2007; 이재분·강순원·김혜원·이해영·서유미, 2008; 전홍주·배소영·곽금주, 2008)가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현저한 특징으로 인해 사회적 영향력은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가족 일반과 비교해 국제결혼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보여주는 발달과 교육적 성취에 있어서의 특수성, 그 가운데에서도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에서도 가족적 환경, 특히 외국 출신 ‘어머니의 언어적, 문화적 한계’라는 단일한 요인이 이러한 특수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 내지 교육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소수자의 학업 성취 상의 한계를 설명하는 고전적인 이론인 전형적인 문화결핍이론(cultural deprivation theory)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미국의 흑인이나 히스패닉, 원주민 아동들이 낮은 학습 성취를 보이는 것과 같이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자녀들 역시 부모가 학업에 필요한 문화적 역량이나 기술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한계에 직면한다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만, 한국사회 다문화가족의 특수성 상 가족 전반 내지 부모 모두의 한계를 지적하기 보다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에 익숙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에도 소극적인

1) 이주민 등 소수집단 자녀의 학업성취는 전통적으로 문화결핍이론, 문화우위이론, 문화갈등이론, 문화상충이론 등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이 가운데 문화결핍이론은 소수집단 가족의 ‘결핍된’ 환경이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는 논지로 철저하게 주류사회 중심적이며 인종차별적 함의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우위이론이나 문화갈등이론은 문화결핍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으로, 문화우위이론은 아시아계 미국인 아동의 높은 학업성취를 이들의 독특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며, 문화갈등이론은 소수집단이 학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들의 문화가 주류사회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문화상충이론은 일본계 미국인 등 특정한 집단의 학업적 성취는 일본과 미국 중간층 문화의 유사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조혜영·서덕희·권순희, 2008: 22-24).

외국 출신 어머니를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결핍’의 대상으로 지적한다는 점에서 미국사회의 관련 연구 경향과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존의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요한 장애요인을 분명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몇몇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미 즉각적으로 가시화된 현재의 문제에 집중한 반면, 이러한 문제가 생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배태되고 심화되어온 양상을 포착하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교육을 어머니 역할로 고정시킨 가족제도 자체를 당연히 한 채 어머니 개인의 역량을 문제의 원인으로 강조함으로써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 가족 외부와의 네트워크,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관한 지배적 담론 등 구조적 요인을 적절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에 비해 현저히 늦은 성인의 재사회화(re-socialization),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 속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개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자녀교육에 있어 직면하는 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자녀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족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자녀교육에 관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개인적, 가족적 차원의 역량 자체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 역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개도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21명²⁾의 경험을 통해 자녀교육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자녀교육 추진 역량 뿐 아니라 발전 가능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점을 다루는데 있어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한국인 남편 등 가족원과의 관계, 자녀교육에 관한 요구를 발견

2) 인터뷰 대상자의 출신 국적은 필리핀 출신 7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몽골 1명, 러시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중국 5명 등이며 이 가운데 한국계는 중국 출신 1명, 러시아 출신 1명 등 총 2명이 포함되었다.

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차원의 역량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 글에서 주요하게 시도하는 바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만 현재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과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가시적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그 구조적 요인에 접근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하며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어머니로 산다는 것

일반적으로 자녀 발달에 있어 가족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 계기를 제공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특히, 부모는 자녀와 일차적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성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획득해가는 사회화, 문화화 과정이 진행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자녀발달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부모에게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은 자녀교육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자녀발달에 있어 이처럼 핵심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부모 자신이 한국사회와는 여러모로 다른 환경에서 생애 대부분의 기간을 보내며 사회화, 문화화 과정을 거쳐 왔다는 사실은 자녀교육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모 자신이 출신사회에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더라도 한국사회에서는 당연히 되는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 않은 만큼, 일반적 한국인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조차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공식제도나 비공식적 관행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제한되어 있어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자녀를 키워내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주와 함께 생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쌓아온 사회적 관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각종 역량을 확보하며 자녀교육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제를 발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 ‘외로워도 슬퍼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다문화가족이 자녀교육 과정에서 보여주는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러한

어려움이 가족원 사이에서도 특히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족내 자녀교육 역할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부과하는 특수한 젠더구조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제결혼 구조가 맞물린 결과, 가족원 가운데에서도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공식적 교육제도나 비공식적 관행 등을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교육을 전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생활 초기 단계에 기본적 생활 적응도 어려운 여성들도, 심지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기본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여성들도 이러한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충남 아산 거주, 한국생활 6년, 딸1 아들1>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때부터 수차례 수술, 입원을 반복했을 때) 아, 말도 못하게 답답했어요, 말귀 못 알아들어서. 그리고 애기 낳고 애기 서울에 있고, 나는 여기(아산)에 있고, 거기 면회 시간이 30분 밖에 없어요. 꼭 10시 맞춰서 가서 애기 봐야 했어요. 거기 중환자실에. 우리 7시 일어나서 9시 반까지 서울 도착해야 돼서 그 때 힘들었죠... 혼자 가는 날은 특히 말귀 못 알아들어서 힘들어가지고... 많이 답답했어요.³⁾

<베트남 출신, 인천 거주, 한국생활 7년, 아들1 딸1> 베트남에는 애기 그냥 밥만 먹여주고 그냥 혼자 크게 해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그림책 같은 거 남편이 사주면 제가 안 읽어줘요. 한국말 읽을 줄 아는데 그래도 안 읽어줘요. 남편이 내가 사줬는데 왜 안 읽어주냐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는 애기는 밥만 챙겨주지 지가 스스로 커서 학교 들어간 다음에 읽어, 그랬더니 남편이 한국에는 안 그래,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째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2.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업성취에 대한 끝없는 우려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자녀교육 자체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3) 가능한 한 인터뷰 대상자의 표현을 살려서 표기하였다. 한국생활 기간과 자녀 현황은 2009년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관심사이자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전적으로 낯선 환경에서 필요한 기본사항조차 충분히 알지 못하고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않으며 게다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만한 네트워크도 결여된 상황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결혼이민자들의 가장 큰 공통의 걱정거리이자 관심사는 언어발달에 관한 것이며, 자녀의 입학과 함께 걱정꺼리는 언어와 문화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몇몇 과목 성적으로 전환된다. 재문화화의 보편적 한계로 인해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국 생활 초기 한국어가 서툰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자신과 단 둘이 보내야 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특히 첫째 아이의 언어 발달에 민감한 데에는 이러한 요인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주위의 비교 가능한 사례는 이러한 불안감을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스로도 자녀 발달에 필요한 언어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할 만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는 데 비해 자신과 유사한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사례나 이에 대한 소문은 매우 흔한 만큼,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태국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7년, 딸3> 저는 걱정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한국말 못 하니까 애들은 말 자주 할 때 또 우리가 한국말 잘못하면은 애들이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주로 하면 좀 그렇다... (이주여성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본 거 같아요. 교회 같이 다니는,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네. 그리고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일곱 살 여덟 살 되잖아요, 그런데 (이주여성) 아이들은 아직 한글을 못하는 거 있어요. 여덟 살 되면은 1학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걱정이 하고요.

<베트남 출신, 경북 구미 거주, 한국생활 13년, 아들2> (결혼이민자들이) 같은 동네에, 같은 면에도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데, 이야기 해보면 다 어려워요. 집집마다 다 문제 있어요. 남편이나, 돈이나, 가족생활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 (아이 문제로 힘든 집) 네,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 △△이는 한국말은 잘 하니까. 지금 읍내에 1학년짜리 애 있는데, 개도 엄마가 외국인이에

요. 말을 못해갖고 다 걱정했어요, 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으라라라라 이렇게 말해요(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괜찮아져서, 학교 들어가기 전일부터 이제 말 잘해요. 그런데 그 집도 돈 없어가지고, 유치원도 못 보내고 그랬어요. 말은 하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받아쓰기 하면 10점, 30점 이렇게 받아요.

3. 언어사용에 대한 모순과 혼란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가 적절한 언어발달을 보인다고 해도 이러한 걱정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도 부모로서의 정체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해주는’ 책도 못 읽어주는 어머니로서 자신감을 형성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부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사정을 몰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자신, 심지어 아이를 적절히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이다.

<베트남 출신, 인천 거주, 한국생활 7년, 아들1 딸1> (그림책) 예전에는 그냥 읽어요. 주르르 주르르 읽는데, 의미는 예전에는 몰라요.... 예전에 걱정했어요, ○○(큰아들)이 세 살, 네 살 때. 세 살 때 말 잘 안했어요. ○○이가. 제가 한국말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중국 출신, 충남 아산 거주, 한국생활 9년, 아들2> 애들 고모가 책 물려줬어요. 우리 집에 다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읽어주려고. 근데 내가 솔직히 한글 다 아는데, 띄어 읽는 거 잘 몰라. 여기까지 읽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를 내가 잘 몰라요. 애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가 한글 느린가... 내가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이에 더해,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모순은 이러한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켜 자녀와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 자체를 저해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익숙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발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숙한 한국어로 최소한의 말만 하거나 아예 말은 하지 않는 사례까지 발견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영어 사용자 이외의 결혼이민자들에게서 두드러진다.

<베트남 출신, 서울 거주, 한국생활 5년, 딸2> (애하고 둘이 집에 있을 때 말은 주로) 한국말 했어요. 하나, 하나 단어 이렇게. 그냥 그런 거만 알면. 베트남어 절대 안 해요. ... 왜냐면 아기 처음 말을 배우니까, 우리는 베트남 말로 하면 아기 그냥 베트남 말로 해요. 지금은 내 친구 아기한테 베트남 말로 하니까 베트남 말만 하고 어린이집 못 가요. 선생님 무슨 말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 (베트남말) 안 해요, 그냥 애기 다섯 살 되면 한국말 잘 알고 그 땐 베트남 말 가르쳐줘요.... (그럼 본인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한국말은 잘 못하잖아요, 베트남 말 하면 잘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중국 출신, 구미 거주, 한국생활 6년, 아들1> 제가 한국말 처음에 못 하니까. 그런데 제가 중국말도 안 했어요. 애가 중국말 배우면 한국말도 못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려워해, 중국말 들어, 한국말 들어, 어려워, 그러면 나중에 한국말도 몰라, 중국말도 몰라.” 그래서 안 했어요. 나는 한국말 할 줄 모르니까, 제가 그냥 말 안 해요.

4. ‘어머니 탓’이라는 골리앗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은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이들, 나아가 사회 전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자녀발달의 특수성과 어머니의 역량에 관한 일정한 방향의 담론이 강화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데, 자녀교육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신과 자녀를 둘러싼 주위의 시선에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대해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온통 부정적인 함의로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탓이 바로 ‘외국인 어머니’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주위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유전이나 신체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발달 문제는 무조건 ‘어머니의 결함’ 요인으로 귀결시키는 사례까지 발견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교육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형성하기 힘들며 크고 작은 자녀교육문제에 있어 자신의 개인적 요인 이외의 요인을 발견하

기 어렵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원, 교육관계자, 주위의 다양한 사람 사이에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일종의 숙명론이 자리 잡으면서 자녀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통해 자녀교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자신의 한계로 인해 자녀교육에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패배의식으로 연결될 우려도 크다.

<베트남 출신, 서울 거주, 한국생활 5년, 딸2> 지금은 ○○이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 주면 ○○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발음이… 그래서 걱정이 돼요. … 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외국인이고, 같이 다녀도, 못 하는 거 같아서 좀… 한국 사람의 얘기는 좀 공부 잘 해요. 진짜요. 우리 아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나중에 걱정이 돼요.

자녀교육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향한 부정적 시선은 어머니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녀와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한계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보육기관, 유아교육기관, 학교 등 가족 외부와 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자녀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단계가 오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발달에 대해 부정적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그 원인을 어머니인 자신의 결함으로 귀결시키는 지배적 담론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지닌 이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부모로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녀, 교사, 학부모 등 자녀교육의 장에서 만나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담론이 피부색이나 말투, 어머니 출신국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놀림, 따돌림 문제와 결합되면 그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은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중국 출신, 충남 아산 거주, 한국생활 9년, 아들 2> 나는 발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사투리 같은 것도 있고. 내가 한국말을 좀 더 많이 해야 말도 늘고 그럴텐데, 아이한테 발음이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 애가 있잖아요, 네 살 때부터 말을 좀 했는데, 애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말 쪽으로 조금 느렸어요, 그 때. 제가 애들 모임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어리고, 말 한 마디 하고 그러면 “엄마 말이랑 똑같이 한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애가 사투리 쓴다고 그러고. …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엄마랑 똑같이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낙인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로 발달에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측면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그 원인을 무조건 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구조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 자녀교육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심지어 자신을 자녀성장에 있어서 부정적 존재로 보는 담론을 스스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내면화(internalization) 과정을 통해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면서도 부모로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은 결여되어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형성해가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한 자녀교육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해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조차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교육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확충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필리핀 출신, 서울 거주, 한국생활 11년, 딸2> 내 생각은, 애들끼리, ○○이 맨날 나랑 오래 있으니까 안 돼. 난 한국말 못 하지만 그런데 교육 요즘에는 알아요. 아, 안 돼. 나한테는 ○○이가 못 배워, 배울 게 없어요.

Ⅲ. 여성결혼이민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다.

이상과 같은 제반 과제에 대해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서 대응해가고 가족 외부와의 사적, 공적 관계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과정은 진행되어 간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이 직면하는 각종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교육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극적 대응이 시도되는 부분은 언어 발달과 이와 관련된 학업성취 문제로 여성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남편, 주위사람들, 공공기관까지도 관심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1. 재-문화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고민에 대응

해가고 있다. 우선 적절한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인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무엇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스스로 한국어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아동의 문화화와 성인의 재-문화화 간 속도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의지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아이의 발달을 이끌기 보다는 기껏해야 ‘아이와 함께 배워가는’ 수준에 만족해야 한다.

<태국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7년, 딸3> 엄마가 공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해요. ... 저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애들 때문이에요. 만약 더 어려우면은, 아직은 어렵지 않잖아요 기억 나온 이런 건 저도 대충 알아요. 조금 더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애들 때문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출신, 충남 아산 거주, 한국생활 6년, 딸1 아들1> 열심히 배워야죠. (그래도) 가끔 ○○이한테도 저, 한국말로 유치원에서 별 거 많이 배우니까. 애기가 나한테 말 가르쳐줘요. (웃음) 한 번은 나보고 “엄마, 그것도 몰라?”

<중국 출신, 충남 아산 거주, 한국생활 9년, 아들2> 저는 ○○이, △△이 학습지 매일 이렇게 얹혀놓고 십 분 할 때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 우리 중국 사람은 발음에 이렇게 혀 소리 들어간다고요, 설음 알아요? 설음이 중국어에는 있어가지고 내가 한국말을 다 알고 듣고 해도 발음이 아직 어색해요.

2. 가족 차원의 대응 시도

재문화화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자녀의 적절한 언어발달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대안은 자녀양육·교육 역할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남편의 참여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인 남편이야말로 자녀의 언어사회화와 문화적 지식 획득에 있어서 어머니인 자신이 지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보고 이 부분에 있어 남편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태국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7년, 딸3> 저는 걱정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한국말 못 하니까 애들은 말 자주 할 때 또. 우리가 한국말 잘못하면은 애들

이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주로 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아빠가 좀 나은 거 같애. 지도할 때. 한국말 사용할 때.

<필리핀 출신, 충북 청주 거주, 한국생활 13년, 아들2> 맨 처음에 저도 ○○이 아빠한테 많이 했어요. 저는 영어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다 영어책 보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 교육 전달 할 수 있는데 남편은 저기 한국어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할 하면은 좋은데 항상 바쁘니까. 주말에 일 안 하면은 저기 같이 나가서 박물관도 다니고 다니면서 ○○이한테 △△한테 옛날 한국 모습들 보여주고 교과서 그런 거 옛날의 방식 조금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출신, 인천 거주, 한국생활 7년, 아들1 딸1> (애기 키우면서 남편이랑 혹시 애 키우는 거 때문에 다투거나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있기는 한데 남편은 다 이해해줘요. 남편은 제가 외국인이고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2-3년 정도 지나면 한국말 잘 하잖아요. 그 때부터 자기가 얘기해요. “여기는 베트남과 다르다. 애기가 낳으면 모두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교육을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데 가서 아기 교육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애기한테 책도 읽어주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거 했는데, 웬지 내가 혼자 말하는 거 같아요. 남편은 안 하고. 베트남에도 뭐 하면 부모 같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는데 “애기 교육은 엄마가 다 해야 된다. 남편은 돈만 벌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싸웠죠. 그 때는 큰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체명)에서 이야기 나누는 법 배워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무조건 소리 크게 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목소리 크게 하면 남편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남편이랑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많이 얘기하고, 앞으로 당신 원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말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해달라고. 그 때부터는 같이 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싸우는 거를 좀 안 했어요. ... 이제는 남편이 일찍 와서 애기 밥 먹이고 그래요. ...애들이랑도 더 많은 시간 보내구요.

<베트남 출신, 의정부 거주, 한국생활 12년, 아들 2> 1학년부터 엄마 힘들어요. 날마다 알림장, 준비물 많아요. 1학년 시작부터 날마다 알림장 있어요. 그 때는 제가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집에 와서 큰 애가 엄마 이거 준비해 주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서 항상 우리 남편이 와서 남편이 사 주고. ... 집에서 제가 수학 같은 것만 알려주고, 국어 같은 건 아빠가 가르쳐 주고. (남편이) 늦게 와도 아이 공부는 꼭 봐주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받아쓰기도 시키고 애들을 많이 챙겨요.

일부 가족, 특히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는 상당기간에 걸친 소통과 역할 조정을 통해 이러한 요구가 수렴되어 남편의 자녀교육 참여가 확대되는 긍정적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참여를 향한 강한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일로 바빠거나’ 스스로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녀교육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 남편들은 자녀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여 하더라도 의사나 교사 등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보완하거나 교육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정도에 집중되어 있을 뿐 정작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언어 사회화나 특정 과목 공부를 도와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구체적 사안 별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요청에 따라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일상적인 구조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출신, 경북 구미 거주, 한국생활 6년, 아들1> 제가 집안일은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남편이 그런 거 안 도와주는 거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를 제가 성격이. 아주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놓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랑 같이 많이 못 노는 거는 많이 서운한데... 하지만 남편이 시간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 (남편이 해줬으면 하는 것) 있어요. 있는데, 남편이 일이 있다니까 하지 말고 집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태국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8년, 아들2 딸1> (1학년 입학하고) 친구들 못 따라가요. 혼자서 스스로 읽도 못 하니까. 그리고 신랑도 좀 무시하니까. 외국에서 나오니까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좀 무시해가지고 (아이가) 읽는 것도, 책 읽는 것도 발음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그렇게 있어요. 또, ○○이가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챙기는 거 있잖아요. 서류도 있고, 통지 나오니까 뭐, 뭐 떼야 되잖아요.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귀찮아가지고 좀 어려워요. ... 학교에서 그 알림장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은 잘 하지만 어느 뜻인가 모르잖아요. 제가 몰라서 남편 보여주면 “아, 나도 몰라!” 딱 그래요.

그럴 때는 진짜 속상해요... 혼자서 이렇게 엄마가 여기저기 알아서 조금, 사람 만나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잖아요. 그렇게 혼자서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태국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7년, 딸3> 저는 처음에는 남편. 그 때 저 때 키웠을 때는 기억나는데, 오래되니까 또 이젠 잊어먹는 거 있어요. 처음부터는 아마 제가 한국말 괜찮다 생각할 때는 의사 얘기했을 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수첩 있잖아요. 수첩. 그거 보고 (주사 챙기고), 잘 모르는 거는 (의사한테) 적어주세요 해서 집에 가져가서 남편한테 보여주고요. 왜냐면 남편이 항상 바빠요, 회사 다니니까. 예방주사 할 때는 평일 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그렇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밤에 야근 들어 가면은 낮에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저 혼자 해요. 다 혼자.

<중국 출신, 충남 아산 거주, 한국생활 9년, 아들2> (남편이) 애들이랑 놀아주는 건 잘 놀아주지만, 저는 책도 읽어주고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는 잘 못해줘요. 별로 적극적으로 교육에 나서는 편은 아니에요. 한 시간이나 삼십분 놀아주면 그게 전부지, 애들 가르치는 건 되게 힘들어 하데요, 또 (웃음) 회사 일만큼 힘들어하는 거 같애. 그래서 잘 안 해요, 이제는.

3. 가족 외부와의 관계를 통한 대응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족 외부와의 관계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녀양육 및 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개인적 노력이나 가족 관계를 통한 대응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의존하는 대안은 가족 외부와의 관계를 동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자녀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와 참고의 틀을 갖추는데 있어서도 가족 외부와의 관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주로 인해 기존에 쌓아온 사회적 자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한국생활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공백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이 저해되어 부모로서의 기본적 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관계 형성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베트남 출신, 서울 거주, 한국생활 5년, 딸2> 그 때는 제가 말을 좀, 안 해요. 공부 안 해서 걱정도 하고, 말을 할 때는 아마 그 사람은 모르니까 말 잘 안 해요, 제가. (말을 하면은 혹시 틀릴까봐요?) 네.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 때. 그래서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좀 울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 때 애기 있었어요?) 네. (애기 있을 때도 울었어요?) 네, 힘들 때는 엄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은) 그 때는 없어요. (그러면 애하고 둘이 하루종일 집에서 있었어요?) 네. ...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그 때는 왜 집에만 있었던 거 같아요?) 학교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아기도 너무 갓난아기니까, 어디 가려고 해도 둘이 있으니까 힘들고...(아이 두 명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적은) 어렸을 때. 집에 둘만 있었을 때.

<중국 출신, 경북 구미 거주, 한국생활 9년, 아들1>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남편 만나 결혼하고) 임신하고 일 쉬기 시작했어요.... 진짜 외로웠어요. 정말 센터 나오면서 이렇게 구미에 중국사람 많구나, 그 전엔 몰랐어요. ...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로워. 그런데 나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저기 한국 오자마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일하느라 회사만 다녔기 때문에 달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일하니까. (그나마 아는) 사람들이 다 회사 다니니까 바빠서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한 번씩 전화하지만, 그렇게 막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고 그렇게 못해요. 연락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지내는지. (한국인 친구분들도 없으셨구요?) 네. 한국말도 못 하니까 친구들 어떻게 사귀어요. 그냥 회사에서 일할 때 중국말 계속 썼고, 이제 임신하면서 회사 그만 두는데 여전히 한국말 할 줄 몰라요. 한국사람 동네에 다 있어도 친구 어떻게 사귀겠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 때 어떠셨어요?) 외롭죠. 내가 여기 뭐하고 있나... 임신해서 이렇게 애기는 배 안에 있는데, 나는 하루종일 할 것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많이 외롭죠. 우울해지고 말을 별로 안 했어요. 하지만, 저희라고 해서 아이를 그냥 막 내버려두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제가 애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애기 눈을 이렇게 보면은 애기가 뭘 원하는 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제가 챙겨서 다 해줬어요. 애기 말하기 전에 다 챙겨 줬어요. 그런데 힘들었어요, 그 때. 제가 많이 예민해가지고, 시계 소리 있잖아요. 시계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집에 애기랑 나랑 둘이 있으면 진짜 조용하니까 시계 소리도 이렇게 다 들려요. (째깍째깍 하는 소리요?) 네, 그게 막 다 들려요. 그게 듣기 싫었어요, 진짜로. ..네, 왜냐면, 사람 없으니까. 사람 없고 조용해서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 우리

집 조용했어요. (아기랑 그 때 둘이만 집에 있을 때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서 밤늦게 돼서야 들어오니까 그냥 둘이만 있어요. 가끔 전화는 와요. 남편이 전화하는데, 낮에 그러면 저는 거의 그냥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못 받을 때도 있고. 낮밤이 바뀌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때 저는 이미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우울증 거의 걸려 있었어요. 애기 낳고 집에 왔잖아요. 미역국 없어요. 애기 낳자마자 저기 뭐지? 애기 낳고 가는 집...(산후조리원이요?) 네, 산후조리원. 우리 ○○이 낳고 거기 2주일 있었어요. 있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올 때 애기 아빠 출장 가거든요. 파주에. (오랫동안 가셨어요?) 1주일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미역국도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애기 낳고, 우리 애기는 12월생이니까 집 밖에 못 나오잖아요. 일단 못 나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죠. 고향도 생각 많이 나고... 내가 여기 왜 있나 싶고. 다시는 애기 안 낳아야지, 그런 생각 했어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는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관계로 선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험과 조언은 자녀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관계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큰 제한은 있으나 한국인 여성들과의 관계 역시 교육제도나 비공식 문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베트남 출신, 인천 거주, 한국생활 7년, 아들1 딸1> ○○(이주여성단체)에서 여자 친구들 되게 많아요. 멘토링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도 엄청 얘기 많이 하구요. (무슨 얘기해요?) ... (아이 키우는 것 관련해서도) 누구 집 애기는 밥 잘 안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키 잘 안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는 건 다 알려줘요. 병원 데려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다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비슷한) 무슨 음식 줘라 그런 거도 알려 준다고.(베트남 동생 중에 ... 애들 가르치고 그럴 때 필요한 거 지원받고 싶어하는데 못 받는 분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도 많아요. 몇 명 알려줬어요. 제가. 남편이 수입 많지 않고 그러면 동사무소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알려줬어요. 아이들 유치원도 보내고 (어떻게 알려줬어요?) ○○(이주여성단체) 있다 보면 프로그램 여러 개 다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거 얼마나 괜찮은 건지 미리 다 알아보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요. ... (애기 아프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거 어디서 사는지 잘 몰랐을 때) 그 때 제가 한국말 모르지만, 밑에 5층에 만나는 한국 언니 있어요. 그 때 언니랑 만나서 슈퍼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언니는 저보다 2주 전에 임신했어요.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니랑 같이 가서 사요. 그리고 애기 낳을 때 준비할 여러 가지 옷이랑 이런 거 제가 언니한테 얘기해서 언니도 저하고 같이 애기 용품 파는 데 가서 샀어요. (그 언니는 어떻게 친해졌어요?) 그 언니는 처음에 제가 너무 심심해서 놀이터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남편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는 큰 애기 데리고 놀이터에 놀고 있어요. 그 언니가 맨날 제가 남편 기다리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 보고 말 걸었어요. 그 때부터 서로 이야기 나누고 제가 말하면 언니가 다 알아들어요.

4. 공적 지원과 사교육의 활용: 외부로부터의 불안한 지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발달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흔히 활용하는 대안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자녀의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주교육자인 자신이 언어 발달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일찍부터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시설이나 관련 지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서로 알려주며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나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언어치료, 대학생 멘토 등 자녀 지도 자원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걱정이나 고민을 해결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중국 출신, 충남 아산 거주, 한국생활 9년, 아들2> 애가 있잖아요, 네 살 때부터 말을 좀 했는데, 애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말 쪽으로 조금 느렸어요, 그 때. 제가 모임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어리고, ...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애를 (어린이집) 보내야겠다. 그래서 다섯 살 때 보냈어요. ... 네 살, 다섯 살 말 한참 배울 때니까 보내야겠다 싶더라고요.

<베트남 출신, 서울 거주, 한국생활 5년, 딸2> (딸) 둘이 다 어린이집 다녀요. (언제부터 다녔어요?) 음... 두 살부터? 한국말 제가 좀 고민하니까, 제가 그래서 일찍 보내요. ... 좀 그냥, 제가 한국말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일찍 보내고 앞으로 엄마도 애기한테 배우고 그래요. 지금 괜찮아요. 한국말을 잘 해요.

<태국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8년, 아들2 딸1> (아이 학교 보내면서 힘든 게 많았는데) 다행히 그 다문화가정 선생님이. 방문했는 그 선생님이 다 얘기해주고 같이 하면서. 선생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서류 저기, 예방접종이랑 그런 거 다 써야 되니까. 몇 번 맞았는데, 어떻게 했는가 다 쓰니까요. 그거는 너무 복잡하고 선생님이 다 했거든요 같이.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서 보내주는 선생님 있어요.(선생님은 언제부터 오셨어요?) 음... ○○이 한 번, 7살 때 왔었어요. 그, 한글 잘 모를 때. 한 번 제가 신청했거든요. (저랑 ○○이) 둘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 와요.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주로 한글 가르쳐주고, 또...) 네, 가르쳐주고, 엄마도 같이. 저도 같이 배웠어요. (주로 한글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해요?) 한글하고 수학도 좀 해요. 그리고 엄마는 한국 문화. 그것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뭐지? 중요한 무슨 날, 무슨 날 있잖아요. 명절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랬어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 같이. 처음에는 △△랑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따로 따로 그냥. 시간이 안 맞아서, 어린이집에서 좀 늦게 와서 따로 해요. 지금은.

자신이 자녀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걱정을 덜기 위해, 학업 성취를 위한 기초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이 흔히 동원하는 대안 중 하나는 사교육이다. 특히,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거나 영어 능력을 토대로 사교육기관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태국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7년, 딸3> 요즘은 학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도 100프로 안 믿지만, 50프로는 믿고 앞으로는 애들 공부 못하면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더 도움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잘 못하니까.

<필리핀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11년, 딸1 아들1> 이제 애들 수준이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60(점) 이렇게 나와요, 평균이. 그러면 도와줘야 되니까. 학원 보내요. 학원도 보니까, 제가 어려워도, 우리 남편은 “하지 마요.” 그래도

나는, “내가 힘들어도 이거 해야 돼.” 학원비로 (월급은) 많이 들어가고. (두 아이 중) 지금은 하나만 보내요. 위에만. 1,2,3학년 괜찮았다구요. 그런데 지금 4학년 되면서 어려워요. 시험 한 번 두 번, 두 번 봤는데 평균 60짜리 반에 들어가게 돼 갓구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한 번 (학원) 해볼까, 그래서 점수 올라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학원 보내봤더니) 해봤더니 올라갔어요, 성적 올라갔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에서는 사교육이나 공식 지원, 주위의 도움 등 가족 외부의 지원을 동원해 자녀교육에서 직면하는 결정적 과제에 대해 접근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이미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사교육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보의 한계나 지역적 접근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아이와 단 둘이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자녀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조차 주기 어려운 경우처럼 관련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지원 사실 자체를 알기 힘든 상태에 있는 이들도 여전히 있다.

<베트남 출신, 경북 구미 거주, 한국생활 13년, 아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음식. 한국 음식 만드는 법 배웠어요. 1주일에 한 번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컴퓨터 가르쳐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런데 너무 멀어서 제가 다 못 가요. ... 버스가 한 번 아니에요, (갈아타고) 두 번, 세 번 해서 가요. 세 번 갈아타야 가요. 1시간 반쯤 걸려요. 해평까지 한 시간 걸리고, 해평에서 집 들어올 때 또 차 갈아타요. 그런데 그 버스가 많이 없고 기다려요. 두 번 갈아타고, 차 세 개 타고, 많이 걸려요.

<중국 출신, 충남 아산 거주, 한국생활 9년, 아들 2> 어떤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는지도 집으로 편지 부쳐주면 알지만, 안 그러면 몰라요. 인터넷 들어가서 아는 사람도 있다던데,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컴퓨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려워요. 그러니 소식이 없죠, 정보가 없죠. 그래서 모임 할 때는 그런 데 활동해서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통해가지고 조금조금 정보 알고 그제 다예요. 이 모임 없었으면 그런 정보도 알지 못하죠. ... 우리 여기 외국 엄마들이 센터에서 프로그램 있어도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못 가는 사람 많아요. 그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요, 보통.

그러니까 계속 가는 사람은 잘 아는데, 가끔 가거나 안 가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애기 이렇게 키우고 살림 하다 보면, 엄마들이 꼬박꼬박 그렇게 외출하고 센터 가기가 쉽지 않데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센터가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도 잘 가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자체의 한계도 있고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 외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적 지원을 더 이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별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더욱이 부부간 연령차가 큰 가족 구성의 특수성 상 향후 경제적 불안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교육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 자녀교육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필리핀 출신, 서울 거주, 한국생활 11년, 딸2> 선생님 자원봉사 있어요. 마지막 주에 저번 달에 봉사 선생님 왔어요.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바쁘세요.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안 나와요. 왜냐면 시험 때문에. 학교 시험 때문에. 계속 안 왔어요. 그래서 23일은 시험하는데 안 나왔어요, ○○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 봉사로도 있으면은 좋겠는데 지금 봉사가 대학생이니까. 그냥 공부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그래도 진짜 봉사 있으면 좋은데... (막상 필요할 때 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봉사 선생님이 더 올 수 있는지) 물어봐도 몰라요, 아마 없어요. ... 시험인데! 아직 없으니까, 지난주에만 왔는데 이번 주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떡해...봉사 없어 어떡해... 23일 어떡해... (봉사자) 오면은 (시험) 끝났어요.

<태국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8년, 아들2 딸1> 학교에서. 학교 일찍 끝나는 날에 맞춰서 (방문)지도 선생님이 해줘요. 학교 안에서 빈 방에서 두 시간씩 하니까, 거기서 (방문지도교사 수업) 받고. 그래서 2학기도 신청 해놨거든요, 되는가 안 되는가 몰라요. ○○이가 2학년 갈 때까지, 책도 혼자 잘 읽도록 해야 되고... 수학할 때는 문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문제 못 읽으니까, 받침 읽는데는 뜻이 모르니까 몰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뜻을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혼자서 잘못 읽으니까

문제는 못 풀어요. 엄마가 같이 읽어주고 해야지 겨우 풀거든요. 문제를 조금만 더 받침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2학기 그래서 신청 해놨는데 되는가 안 되는가 몰라요. ... 진짜, 2학년이나 3학년 지금 올라갈 때 엄마가, 뭐지? 그 도와주는 거, 일본 언니가 자기도 문제 보니까 엄마가 하나도 몰라가지고 못 도와 준다고. 그 때는 또 걱정했지. 자기가 못 해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때 그 때 걱정이 돼요.

<필리핀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9년, 딸1(남편 이전 결혼 소생 아들2)>
음... ○○가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요. 다른 엄마들은 학원 보내요. 우리 ○○도 보내고 싶어요. 근데 돈 없어, 어떻게 보내요. 다른 부모님들이는 집 방문(사교육)도 있어요. 많이 해요, 국어, 수학, 우리는 없어요. ... 그런 말 들었어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애들이 공부 못해요. 부모님이 잘 못 가르쳐줘요, 학원도 못 보내고 그래서 ○○가 저도 걱정 더 해요. 우리 ○○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돈도 없고, 돈도 못 벌이고. 한국사람 돈 많아요. 학원에 막 보내고. 영어 말도 아이들도 대화를 잘 했잖아요. 우리는 조금 못 해요. 한국사람 100프로. 우리는 30프로. 걱정 많이 돼요.

IV. 아직 풀지 못한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자녀교육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를 풀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의 자원을 동원해 대응해가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언어 발달이나 이와 관련된 몇몇 과목의 학업 성취 이외에 자녀교육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들, 즉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놀림, 따돌림 문제, 공식적 학부모 활동의 한계, 부모로서의 자신감 부족과 자녀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녀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과제를 적절히 처리해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조차도 그 경험을 통해 부모로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다른 과제에 대응해나가는 경향은 매우 약하다.

자녀교육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우선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한계를 들 수 있다. 자녀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과제에 대응하는 양상은 개개인의 언어자본이나 한국어 능력, 가족의 경제력과 가족원

간의 관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어 소통에 별 어려움이 없는 일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스스로 대응해갈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원만한 이들은 자녀사회화에 있어 남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비해 안정된 이들이, 비영어 사용자에 비해 영어 사용자들이 유아교육기관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교육을 동원하거나 언어 치료 등을 위한 사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관련 과제에 대응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서는 한국사회 생활기간이나 한국어 능력, 경제수준 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정한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공식, 비공식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 획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인 여성들과의 관계는 특정 개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수준으로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다소 일방적인 관계로 상호간의 관계로 발전하기 힘들다. 제한된 관계의 경험만으로 한국인 여성과의 관계 형성에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자녀가 공식 교육의 장에 돌입하면 이러한 점이 공식적 학부모활동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관계는 사회적 고립과 부모로서의 기본적 역할 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아이의 초기 양육과 유치원 입학 등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이가 공식 교육의 장에 진입하고 나면 자녀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의미는 구체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차원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놀림, 따돌림 문제나 공식적 학부모 활동의 한계, 부모로서의 자신감 상실과 자녀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에 대해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상당부분 공통의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자녀가 이미 공식 교육의 장에 들어간 이들이 아직은 소수로 경험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적 차원의 대안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교육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과제에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대응해가면서도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기 어려운 데에는 자녀교육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 함의로 가득한 담론이 결정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이 팽배한 가운데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에서는 개인의 여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기 쉬운 주교육자의 한국어 능력을 탓할 뿐 이들이 흔히 직면하는 언어 사용에 대한 혼란과 모순에 대해서는 둔감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직·간접적 지지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 공식 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학부모 역할 수행에 갈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 수행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은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 심리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커갈수록, 자녀교육에서 가족 외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수록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기 쉬우며 결국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장애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을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근본원인을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으로 귀결시키는 담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녀와의 관계, 자녀교육과 관련된 가족 외부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일상적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언어소통이 원활한 한국계 출신들조차 자신의 배경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공식적 학부모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서도 구조적 요인이 여성 개인의 부모 정체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부모 정체성은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서 긍정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들의 공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까지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못하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발전시켜 관련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계기만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민을 풀어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출신, 충북 청주 거주, 한국생활 6년, 아들 2(큰 아들은 러시아에서 한 이전 결혼 소생)>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주위에 있는 결혼이민자들하고 이야기 나눠 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도 걱정이예요. 매일 (이주여성단체)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애들 문제하고 ... 우리가 외국

엄마로서, 물론 우리 ○○이는 그런 건 없지만 다른 아이들은 외모 문제도 있고 둘째는 우리 서류상으로 외국인 등록증 가지니까 호적에서 신랑 이름으로 다 되어 있으니깐 엄마 이름이 안 보이니까요, 남편이름 밑에 살짝 써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이도 놀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없다” 또는 “엄마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도 서류할 때, 뭐……어쨌든 학교 나갈 때도 엄마 외국인이면 “아 그렇구나” 얘기 잘못 났을 때 “아 다문화 가정이라 그렇구나”하고 그런 말을 들을 까봐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런 문제에 대해 많이 얘기해요.

<베트남 출신, 인천 거주, 한국생활 7년, 아들1 딸1> ◆◆(이주여성단체)에서 여자 친구들 되게 많아요. 멘토링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도 엄청 얘기 많이 하구요. … 베트남 사람 멘토링(자조모임을 뜻함)은 한 달에 한번 모여요. …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나오면 ◆◆선생님이 만들어줘요. 그 동안은 은행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박물관에도 가고, 운전 학원도 가고, 학교, 초등학교도 견학 가고 (학교 견학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주여성인데, 앞으로 얘기는 학교 갈 건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은 어떤지 보고 싶다고 해서 여덟 명이 갔어요. … 학교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한국 학교 좋은 거 같아요, 베트남보다. 베트남은 선생님은 교무실이 없어요. 아침에 선생님 와서 학생들이랑 같이 있고, 일 끝나고 나서 선생님 그냥 가요. 회의 같은 거 같이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런데 한국은 얘기를 가르쳐주고 또 교무실 가서 일하잖아요.

이밖에 일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방과후 학교 보조교사 등으로 공식 교육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자녀교육 주체로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부모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하다. 스스로의 자녀교육 관련 활동을 통해 해당자 개개인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실질적 역량을 증진하고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를 바라보는 교우들의 인식,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에 대한 지배적 담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태국 출신, 전북 장수 거주, 한국생활 8년, 아들2 딸1> 지금은 학교 스쿨버스에서 (보조교사)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아이들 이렇게 학교 오면서 태워다 주고 그렇게. … 하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다른 일은, 일자리 저 찾아오는 일자리

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때문에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랑 가깝고 끝나는 시간도 맞춰서 제가 ○○이를 이렇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맡았거든요, 거기서. 우리 ○○이는 많이 내가 봐줘야 되겠다... 다문화 가정 (지도) 선생님도 많이 말해주니까, ○○이가 이런 상태니까 엄마가 많이 봐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제 생각에는, 저는 애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내 아이들이 거기서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학교를, 학교 문화나 아니면 교육이나 그런 거 나도 모르는데 내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겠다, 그래야 아이들 잘 챙겨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잘 맡아서나도 공부 배워야 되니까, 학교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배우고 내 아이들을 잘 챙길 수 있는 정도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도 맡았거든요. 잘은 못하는데 내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농촌이라서 지금 시골이라서 맡아서 하는 엄마, 학부모들은 바빠서 그런 거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일 맡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또 있고, 미리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잘 몰라도... 배워서 한다고 생각하고. ... 이제는 좀 알아요, 학교에 계속 있으니까. 학교 예산까지도 예산 도는 것까지 다 보고 하니까. 교육 문화도 알고 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정부에서 돈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학교에서 돈 뒤에 쓰고 뒤에 쓰고 아니까 공부 많이 됐어요. 또 더 알아내는 거 많이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지니는 특수성은 자녀교육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인 부모’를 전제로 구조화된 공식, 비공식 교육 제도 하에서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하는 만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절한 발달과 교육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구조적 환경 하에서 부모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역시 넘어서 할 커다란 산이다. 또한 교사나 교육, 그 외 주위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심리적, 사회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역시 풀기 어려운 숙제이

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 전반을 ‘어머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그것도 개도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담해야 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반 과제에 대해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서 대응해가고 가족 외부와의 사적, 공식적 관계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과정은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원활한 것만은 아니다. 자녀교육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실제로 적극적 대응이 시도되는 부분은 언어 발달과 이와 관련된 학업성취 문제로 주교육자인 여성결혼이민자나 가족원을 비롯한 주위에서나 이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며, 정부의 지원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 사교육이나 공식 지원, 주위의 도움 등 가족 외부의 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사교육을 동원하기 어렵거나 공식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 교육 전반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발달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과제를 적절히 처리해가면서 부모로서 자신의 역량을 증진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자신감을 형성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발달시키고 또 다른 과제에 대응해나가는 발전적 역동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데 있다. 자녀교육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이들 역시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역량에 자부심을 가지느커녕 오히려 ‘자식에게 해를 미치는 존재’로서 자괴감에 빠지기 쉽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이 보이는 부정적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그 탓을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함으로 돌리는, 그 외의 가능성은 제거하는 지배적 담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으로 인해 부정적 상황에 놓이게 될 ‘숙명’을 떠안을 자녀의 모습을 그리는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

최근 들어 각급 학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부모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참가자들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녀교육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외부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에서의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친정’으로 보내거나⁴⁾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는 아이의 역량과 노력을 기원하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자체가 주교육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야기

4) 연구대상자 가운데 ‘친정’에 자녀를 보내 키운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

될 수 있는 언어 발달을 위시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사후적인 보완책 중심이어서 자녀교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해 개개인 내지 가족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교육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기초로 정책의제를 확충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능력 부족’이라는 익히 알려진 문제 이외에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언어 사용의 모순과 혼란은 자녀에게 적절한 언어 자극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자녀교육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향한 지배적 담론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입학 연령대의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늘고 있지만, 공식교육의 장에서 학부모로서 활동하는 것은 풀기 힘든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과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체적 노력과 가족 차원의 변화, 나아가 사회적 환경이 ‘삼위일체’가 될 때 비로소 본격적 대응이 가능하다. 여성결혼이민자로서는 교육제도와 교육문화에 대한 기본적 정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또래 여성들과의 관계, 공식 교육과 관련된 활동 역량 등을 쌓아야 할 것이다. 방과후 교사 등 공식교육과 관련된 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의 자녀교육활동이 활성화된다면 관련자 개개인의 역량 면에서는 물론이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류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녀교육과정에 한국인 배우자, 즉 아버지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문화가족에서는 한국어나 한국역사 등 장기간의 사회화, 문화화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문화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 한국인 아버지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참여하는 아버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가족별로 아버지의 참여도는 편차가 커서 자녀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관심한 경우에서부터 언어발달이나 공부를 위한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까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병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거나 교육관련 제도나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일상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그 수준의 지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소통이 매우 제한되고 기본적인 생활 적응도 이루어지지 못한 자녀교육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을 뿐, 어느 정도의 생활 적응이 이루어진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버지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서는 직장생활의 부담, 교육적 성취에 대한 자신감 결여 이외에 가족관계 초기 단계에 이미 고정된 자녀교육 역할 구조가 경직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 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자녀교육 역할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그 기초 위에서 실제 자신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식과 지식, 기술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역량 증진과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과 관련해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결핍’ 내지 ‘부적응’의 존재로 규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 이러한 접근은 발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접근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을 일방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녀교육을 추진해가는 주체로 인정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열쇠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을 자녀교육에 있어 숙명적 결합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역량을 증진하고 자신감을 획득하며 나아가 문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고 그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하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질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때, 비로소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배적 담론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효진·최진선. 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_____. 2007.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재분·강순원·김혜원·이해영·서유미. 2008.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전홍주·배소영·곽금주.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161-186.
- 조영달. 2007.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외. 2006.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서덕희·권순희.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2): 105-134.

(2010. 9. 10. 접수; 2010. 10. 15. 수정; 2010. 10. 26. 채택)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ponses to Their Children's Education Problems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Yiseon Kim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Multicultural families with somewhat different backgrounds from ordinary Korean families are more likely to face various difficulties in educating their children under the education systems based on 'Korean parents'. In particular, in social environment where negative prejudices against immigra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prevailed, if the foreign moth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education, the problems become more complicated. This paper, based on the interview data of 21 female marriage immigra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deals with the foreign mothers' children education problems, their responses to the problems with personal, familial and social resources, and explor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education. Foreign mothers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are much interested in the children's education and eager to cope with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ly their children's supposed limitation in Korean language and Korean history classes. But they have little experiences to develop their own competence as parent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children in this process. In order for the dynamism of parenthood development to be activated, it is first needed to move away from the existing approach focused on supplementing the supposed 'lack' of foreign mothers' capabilities from the outside of family. And the practical approach should be strengthened to recognize the status of foreign mothers as the subject of children education. Foreign mothers are needed to enlarge their own ways to confirm and exert their potentials as the subjects of the children's education. It is also important that Korean fathers who have withdrawn from the children's education have opportunities to identify their positions and roles as the subjects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female marriage immigrant / foreign mother, Korean father, child educat

연구논문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장지혜**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여성 이민자와 결혼 한 한국인 남성을 찾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 글은 ‘이주’와 ‘결혼’, 즉 ‘국제결혼’이라는 사회적 사건을 통해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사회적 자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다각적으로 살펴 그 핵심요인을 찾아내는 것과 사회적 자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데 있다. 종속변수인 생활 만족도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한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살핀 후 독립변수인 구조적 속성 변수, 경제적 자본 변수, 인적 자본 변수, 사회적 자본 변수를 가지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가족 내의 유대관계를 통한 신뢰, 가족의 지지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이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생활에 있어 만족한다면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적 차원의 노력, 정부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국제결혼,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

* 이 글은 2006년 12월 한국사회학회 전국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다듬은 것이다.
** 코리아리서치센터 연구원. mine337@gmail.com.

인간은 상호관계로 묶어지는 매듭이요, 거미줄이며, 그물이다.
 이 인간관계만이 유일한 문제이다.
 — 생텍쥐페리

I. 서론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약 8만 명에 달하는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설지가 않게 되었다. 최근 혼인이주 여성의 증가도 이주의 여성화를 부추기고 있다(이혜경, 2005a). 설동훈(2005)은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이미 실질적 의미에서 이민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15년 동안 국제결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3.6%에 달했다. 1990년대 초기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 남편의 비율이 외국인 아내보다 많았으나 1995년부터는 외국인 아내의 비율이 외국인 남편의 두 배에 이른다. <표 1>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942명이고,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80,813명이다. 2005년 총 결혼건수 316,375건 중 국제결혼이 43,121건(13.6%)이었고, 그 중 72.3%(31,180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7.7%(11,941건)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64.7%(그 중 47.4%는 중국동포)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10.6%)·필리핀(8.2%)·베트남(7.0%)·태국(2.0%)·몽골(1.6%)·러시아(1.4%) 등의 순이다(표 2).¹⁾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Zolberg, 1991; 설동훈, 2000; 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샬리아, 2003; 설동훈·김운미·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정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그러므로 ①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나라들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②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민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적 문화, ③ 신부 부족을 해결

1) 통계청 자료는 결혼건수를 보여주고, 법무부 자료는 ‘현재 국내 거주(stock) 결혼이민자 수를 나타낸다.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5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1990-2005	5,884,864	240,755	4.1	159,942	2.7	80,813	1.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계산(설동훈 외, 2005). 내용 추가정리.

〈표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2005년 4월

(단위: 명, %)

출신국	외국인 아내		등록외국인		2002년 이후 귀화자	
	인원 수	%	인원 수	%	인원 수	%
전체	66,912	100.0	55,964	100.0	10,948	100.0
한국계 중국인	31,739	47.4	24,681	44.1	7,058	64.5
중국	11,577	17.3	9,721	17.4	1,856	17.0
일본	7,097	10.6	7,076	12.6	21	0.2
필리핀	5,457	8.2	3,692	6.6	1,765	16.1
베트남	4,675	7.0	4,592	8.2	83	0.8
태국	1,364	2.0	1,340	2.4	24	0.2
몽골	1,072	1.6	1,055	1.9	17	0.2
러시아	950	1.4	933	1.7	17	0.2
기타 구소련, 동유럽	1,190	1.8	1,161	2.1	29	0.3
아시아 저개발국	595	0.9	549	1.0	46	0.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	0.1	28	0.1	7	0.1
중남미	140	0.2	124	0.2	16	0.1
기타 선진국	1,021	1.5	1,012	1.8	9	0.1

자료: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설동훈 외, 2005).

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조장하는 정부정책, ④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을 국제결혼 이주가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성(gender)과 전지구화(globalization) 및 이주(migration)현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 그들은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workers)이면서, 아내(wives)·어머니(mothers)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citizens)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처지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생애정로(transnational life-course perspective)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설동훈 외, 2005).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발전 격차는 선진국 남성과 저개발국 여성이 결혼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나라의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이주하고 있다.²⁾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계층 상승의 꿈을 갖고 미국·일본·한국·대만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난이다. 이주노동자로 해외 취업의 길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빈국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민자가 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남아선호의 결과 낙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그 결과 결혼시장에서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과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성비 불균형에 따른 결혼시장의 교란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사람들은 그 배우자를 구할 때 연령 차이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재혼자 또는 그보다 많이 결혼했던 사람을 배우자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내부 적응과정을 거치더라도, 결혼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우자를 찾기가 힘들어지면, 독신으로 지내거나 아니면 ‘외부시장’에서 배우자를 충원할 수밖에 없다(설동훈 외, 2005).

국내 인권단체에서는 ‘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① 여성 이주노동자, ② 여성 결혼 이민자, ③ 성매매 종사 외국인(또는 이민자)

2) 경제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소득 격차의 확대는 아시아 여성들이 본국 가족을 돕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를 선택하도록 한다(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163).

여성, ④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아우르는 복합개념이므로(설동훈·박경태·이란주, 2004), 혼인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대립 쌍인 ‘남성 결혼이민자’를 ‘국제결혼 이주남성’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설동훈 외, 2005).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 용례를 좇아 ‘결혼이민자’라는 개념을 채택하였다.³⁾

이처럼 1990년대부터 꾸준히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와서 한국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은 다수의 결혼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인권침해와 가족 갈등이 발생하는 데, 왜 이런 국제결혼이 더욱 증가하는가? 반면 설동훈 외(2005)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일반적인 부부관계와 비교했을 때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 중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매우 만족한다는 사람이 23% 인데 반해, 일반적인 한국부부의 경우 13%이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를 비롯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와 사회통합을 시도하려는 노력의 출발점이다. 웰빙(well being)이라는 말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주’와 ‘결혼’, 즉 ‘국제결혼’이라는 사회적 사건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온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사회적 자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의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의 상황에서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결혼의 성격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성별이 구분되는 용어가 보다 적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아내의 경우 결혼을 선택한 맥락에서 이주가 중요한 요인이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란 용어는 여전히 유용성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결혼을 통한 이주가 곧바로 국적취득과 같은 ‘이민’의 성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과 초국가적 성격이 강해지는 이주자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이민자’라는 용어의 사용은 보류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 실질적 이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한국 국민으로 한국 사회에 편입 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한건수, 2006)라는 의견에 더 중점을 두기로 한다.

사회적 자본이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사람들 간의 교류빈도 및 밀도가 높고, 상호간의 신뢰가 높아지면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나 신뢰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사적 네트워크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의 삶 속에는 타인과의 교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람들의 관계가 이미 알고 있는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관계의 폭이 관계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일반인과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다각적으로 살펴 그 핵심요인을 찾아내는 것과 사회적 자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김명소(2003)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57.7점에 그치고 있어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행복 또는 삶의 만족을 보다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물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던 삶의 목표가 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우리사회의 가치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 사회에 접어 든 한국사회에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먼저 국내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여성 결혼이민자 관련한 담론을 살핀다. 다음으로 삶의 질 만족도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론의 유용성과 본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논하기로 한다.

1.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담론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주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련한 담론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국제결혼은 국제노동력이동과 관련지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왔다. 20세기 초 ‘사진신부’(picture brides),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전쟁신부’(war brides, military brides 또는 GI brides), 그리고 1970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으로의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s)가 있다 (설동훈 외, 2005: 6-7; 이해경, 2005a: 26-27; 이해경, 2005b: 75-77).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를 통한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여성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질때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해경(2005a, 2005b)은 국내로의 혼인이주와 그 가정에 대한 연구로 국내로의 혼인이주의 추이와 현황을 제시하며, 혼인이주자의 특성 및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방식을 분석하였다. 또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한진수(2006)는 전북지역 농촌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온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여성들이 주로 겪는 문제는 한국 입국 후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에서 오는 좌절, 한국 음식과 주거양식에서의 갈등이 존재한다. 또 시부모와의 관계나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족 및 친족생활에서의 갈등, 자녀 양육에서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중매체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현상(KBS 뉴스타임, 2006년 11월 27일 방송)이나, 가정 폭력의 문제(조선일보, 2005년 3월 22일자; 강준만, 2005)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 ‘국제결혼 10% 시대’에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최소한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초보적인 정착 지원 시스템이라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여성 결혼이민자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은 기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반적 실태 파악 및 정책 제시 측면에 주목한 거시적 수준이었던 반면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2. 삶의 질 만족도

행복 추구, 삶의 만족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각 개인은 '사회'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사회라고 볼 때 결국 인관관계가 행복의 조건일 수 있다. 즉 행복이 인관관계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 86점, 스위스 86점, 한국 61점. 이것은 잉겔하트(Inglehart)가 지난 1997년에 조사한 국가별 삶의 만족도 점수이다. 43개 국가간 비교로 볼 때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24위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1)에서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개인에게 배태되어 있는 지식, 기술, 건강 등 인적자원, 둘째 집단 내 및 집단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 셋째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을 연결하는 정치적·제도적·법적 장치, 넷째 건강, 연령, 생활형태, 사회적 지위 학습, 사회적 연결의 범위 등의 경제 사회적 배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잉겔하트(Inglehart, 1997)에 의해 주도된 세계가치조사는 1인당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물질적 측면에서 탈물질적 측면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잉겔하트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의 목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의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측정과 관련해서 블란체플러와 오스왈드(Balanchflower and Oswald, 2000; 박희봉·이희창, 200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은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반영하지 않은 채 이해될 수 없다는 관점을 받아들여 삶의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3. 인적 자본

자본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생성하는 자원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자본만을 상징하고 있었다. 자본의 의미는 베커(Becker, 1964; 1983)의 인적 자본에 대한 논의를 시발점으로 하여 이른바 비경제적 자본으로 확장되었다.

베커(Becker, 1964; 1983)의 인적 자본은 현물, 화폐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자본이 형성했던 범주를 벗어나 직장 경험을 통한 직무훈련 또는 교육과 같은 인간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전통적 자본과 같이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가리킨다.

인적 자본은 개인이 지닌 능력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인간을 자본재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한 개인이 가진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Schultz(Schultz, 1971)는 투자에 의해 증가될 수 있는 부로서 인간을 취급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봤다. 자본을 어떤 가치의 미래 용역을 만드는 경제적 재산을 갖는 전체성이라고 보고, 인적 자본과 비인적 자본으로 구별했다. 인적 자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그것이 인간의 일부, 즉 인간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자본이다. 왜냐하면 인적 자본은 미래 만족원 혹은 미래 수입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란 보다 나은 직업기회의 이용을 위해 교육, 건강, 내부 이동 등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인적투자의 범주로는 인간 투자를 위해 인간 능력을 향상시키는 행위 모두를 가리킨다(Schultz, 1971).

인적 자본이론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자본으로 보고 인간이 자신에 대해 투자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면 그만큼 높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보았다. 개인의 생산성은 그가 투자하여 축적하는 인적 자본의 양에 달려있고 인적 자본의 투자는 정규교육 또는 현장훈련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즉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투자’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4.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했다.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최초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부르디외(Bourdieu, 1986),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콜만(Coleman, 1988), 포르테스(Portes, 1998), 퍼트남(Putnam, 2000), 린(Lin, 1999; 2001)의 사회적 자본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개방적인 집단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은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를 가진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 양이 증가한다. 폐쇄적인 집단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집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연결망의 크기, 연결망의 강도, 연결망에서 개인의 위치,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학자 라우리(Loury, 1977)가 인종별 소득 격차에 대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설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라우리는 각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과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사회적 자본의 기초라 말하고 있다.

최초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렇듯 특정한 행위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은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와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문화적·상징적 자본의 양에 달려있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이 최종적인 분석에 있어서 경제적 자본으로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콜만(Coleman, 1988)이 말하는 사회적 자본은 그것의 기능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으로 둘 혹은 다수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 안에 내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첫째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 둘째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다. 즉 그것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① 사회적 환경 속의 신뢰성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의무와 기대, ② 사회 구조의 정보 유통 능력, ③ 효과적인 제재를 동반하는 규범이다. 콜만(Coleman, 1988)은 사회 구조가 폐쇄적일 때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용이하다고 보는 ‘강한 연대의 강함(strength of strong tie)’을 중요시 했으며, 인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포르테스(Portes, 1998)는 사회적 자본의 근원을 가치의 내면화, 상호성의 교환, 제한된 연대, 강제할 수 있는 신뢰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포르테스(Portes, 1998)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은 연결망이나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혜택을 확보하는 능력으로 완성적 동기(consummatory motivations)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s)로 구분한다. 완성적 동기로는 가치의 내면화와 제한적 연대를, 도구적 동기로는 상호성의 교환과 강요된 신뢰를 들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기능을 구별하고 있는데 첫째 사회 통제의 근원, 둘째 가족 지원의 근원, 셋째 가족 외 연결망을 통한 혜택의 근원이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인 기능도 언급하고 있는데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 구성원에 대한 지나친 요구, 개인의 자유 제한, 하향 평준화하는 규범의 네 가지를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

퍼트남(Putnam, 2000)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란 연결망, 규범, 신뢰와 같이 상호 이익을 위한 행위나 협동을 촉진시키는 사회 조직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회자본이 축적된 축복 받은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더욱 쉬우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양은 공동체와 관계된 정도나 참여의 수준과 동일시될 수 있다. 또 퍼트남(Putnam)의 특정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는 다양한 방식을 지칭하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받아들여 한국인 이웃과 교류 정도를 파악하였다. 퍼트남은 “사람들은 스스로 가족 구성원, 친구, 애인 등과의 좋은 관계가 이들의 행복의 전제라고 한다”며 사회적 자본이 개인 및 집단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린(Lin, 1999)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목적을 가진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어지고 유통될 수 있는 사회 구조 속에 자리 매겨져 있는 자원이다. 린(Lin, 1999)은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두 가지 차원은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도구적 행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며, 표출적 행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도구적 행위의 예로는 직업 획득,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보상이 있으며, 표출적 행위의 예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유지, 생활에 대한 만족, 긴밀한 네트워크가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총량은 position generator의 방법으로 친족 네트워크에 자리매겨진 사회적 자원의 크기,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밀도, 이웃관계의 정도, 정기적 모임 참여 유무, 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정도, 출신국으로의 송금 여부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투자 가치가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본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좌우되는 것으로 누구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여성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다.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포르테스가 말하는 집합 공동체 내에 자리매겨진(embedded) 사회적 자본의 획득에 초점을 맞추어 포르테스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해 모임 안에서 끈끈한 유대가 강할수록 사회적 자본의 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버트(Burt, 1992)는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 혹은 인적 자본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친구, 동료, 혹은 보다 일반적인 관계”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다.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이라는 연결망의 상대적인 부재가 개인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는 강한 연결망이 중복된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에 약한 연결

망은 새로운 지식과 자원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 1985)의 약한 연줄의 힘(strength of weak tie)과 상통한다. 그라노베터는 사람들이 자기와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부터 얻은 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직업을 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 부르디외와 콜만은 개인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에 중점을 둔 반면 포르테스는 집합체의 구조적 특성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그라노베터(Granovetter)와 버트(Burt)의 이론 보다는 콜만(Coleman, 1988)과 린((Lin, 1999) 모두 ‘강한 연줄의 힘(strength of strong tie)’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인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설명한 콜만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 중점을 두고 연구 결과를 해석할 것이다.

Ⅲ. 자료와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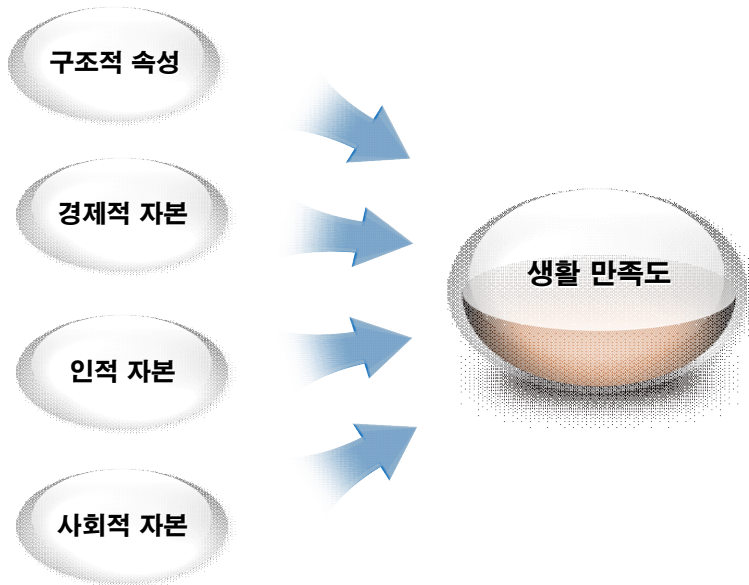
1.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5년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의 원자료이다(설동훈 외,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0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했다. 자료의 특성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시도별로 할당된 표집 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지역은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의 방법을 적용하였고, 그 외의 지역은 이주여성과 관련된 지원단체들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발굴 면접조사 하였다. 또한 모집단 분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농촌과 도시 중에서는 농촌을 수도권과 지방 중에는 지방을,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 수가 많은 국가와 적은 국가 중에는 적은 국가의 표본을 원래 할당비율보다 많이 뽑는 가중표집(weighted sampling)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가구를 면접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에 응한 가구는 총 1,082가구이고,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편 모두가 응답한 945가구에 관한 자료이다.⁴⁾ 이중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어진 표본의 수는 945

명으로 다른 변수들을 이용해 결측값을 추정하는 방법인 MVA (Missing Value Analyse)를 이용해 결측값을 채워 넣었다.

2. 분석방법

1차적으로 종속변수인 생활 만족도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한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살핀 후 독립변수인 구조적 속성 변수, 경제적 자본 변수, 인적 자본 (human capital) 변수, 사회적 자본 변수(social capital)를 가지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틀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구조적 속성 변수로 출신국·거주 지역, 경제적 자본 변수로 본인 소득·가구 소득, 인적 자본 변수 연령·학력·한국어 능력·한국어 문화적응 교육 참여 유무, 사회적 자본 변수로 친족 네트워크에 자리매

4) 자료에 대한 소개는 설동훈 외(2005: 12-15)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겨진 사회적 자원의 크기·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밀도·이웃관계 정도·정기적 모임 참여 유무·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정도·출신국으로의 송금 여부를 독립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측정 방법은 <표 4>에 요약·제시하였다.

1) 종속변수: 생활 만족도(life satisfaction)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종속변수 ‘생활 만족도’의 세부 문항은 <표 3>과 같다. 평균은 5점 척도의 ‘매우 불만’에 1점, ‘대체로 불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을 주어 계산하였다. ‘생활 만족도’ 하나의 변수로 만드는 과정에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크론바하의 알파(Chronbach’s alpha)⁵⁾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값(이하 α 값)이 0.6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데 만족도의 α 값은 0.882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생활 만족도

항목	평균±표준편차
① 남편이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	3.61±1.16
② 부부사이의 친밀감	3.67±1.07
③ 부부의 성생활	3.57±1.05
④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3.26±1.19
⑤ 남편의 소비 성향	3.31±1.22
⑥ 부부간의 대화 정도	3.32±1.20
⑦ 부부가 함께 하는 문화생활 정도	3.16±1.16
⑧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3.50±1.13
⑨ 한국에서의 생활 전반	3.48±.92
⑩ 이웃과의 관계	3.39±.84
⑪ 남편의 부모와의 관계	3.48±1.00
⑫ 남편의 기타 가족·친척과의 관계	3.44±1.03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구조적 속성 변수, 경제적 자본 변수, 인적 자본 변수, 사회적 자본 변수로 나뉜다.

5) 문항 상호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크론바 하의 알파값은 0에서 1까지 이르는 값으로, 문항 간 평균상관관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문항의 수가 증가 할수록 커진다(홍두승, 2005: 120).

〈표 4〉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종속변수	
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 1; 대체로 불만 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만족 4; 매우 만족 5
독립변수	
① 구조적 속성 변수	
출신국 ¹⁾	
중국 동포	중국 동포 1; 기타 0
중국 한족	중국 한족 1; 기타 0
일본	일본 1; 기타 0
필리핀·베트남	필리핀, 베트남 1; 기타 0
태국	태국 1; 기타 0
기타 외국 ²⁾	응답자 국적의 기준집단: 기타 외국
거주 지역 ³⁾	
도시 거주	도시 1; 농촌 0
② 경제적 자본 변수	
본인 소득	일 년 총 소득
가구 소득	월 평균 총 소득
③ 인적 자본 변수	
연령	각 세 단위 연령
학력	학교에 다닌 횟수
한국어 능력	매우 서툰 1; 약간 서툰 2; 보통 3; 약간 능숙 4; 매우 능숙 5
한국어문화적응 교육 참여 유무	있다 1; 없다 0
④ 사회적 자본 변수	
친족의 사회적 자원	position generator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	거의 하지 않는다 1; 1년에 한두 차례 2; 6개월에 한두 차례 3; 한 달에 한두 차례 4;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 5
이웃관계	거의 하지 않음 1; 별로 하지 않음 2; 가끔 함 3; 자주 함 4; 매우 자주 함 5
정기적 모임 참여	“사교 및 친목 모임, 종교단체의 모임, 국제결혼자 권익 보호단체의 모임, 기타 모임” 중 1개 이상 참여자 1; 나머지는 0
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전혀 하지 않았다 1; 1년에 한두 차례 2; 6개월에 한두 차례 3; 2-3일에 한두 차례 4; 한 달에 한두 차례 5; 일주일에 한두 차례 6; 거의 매일 7
출신국으로의 송금	송금 한 적이 있다 1; 송금 한 적이 없다 0

주: 1) 출신국은 모두 1 또는 0의 값을 갖는 가변수임.

2) 기타 외국은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가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기타임.

3) 거주 지역의 기준집단은 농촌임.

4) 기준집단 변수는 회귀분석에 직접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그 값은 다른 범주 변수들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① 구조적 속성 변수

- 출신국: 가변수로 기준 집단은 기타 외국 0,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베트남, 태국 1의 값을 부여하였다.
- 거주 지역: 가변수로 도시 1, 농촌 0의 값을 부여하였다.

② 경제적 자본 변수

- 본인 소득(Income1): 여성 결혼이민자 본인의 일 년 총 소득을 사용하였다. 본인 소득은 취업을 전제로 한다. 취업을 한 여성 결혼이민자만이 본인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 가구 소득(Income2):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월 평균 총 소득을 사용하였다. 가구 소득은 본인 소득을 포함한 개념이다.

③ 인적 자본(Human Capital) 변수

- 연령: 각 세 간격으로 측정되었는데, 18세부터 68세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34세다.
- 학력: ‘귀하가 정규학교를 다닌 햇수는 총 몇 년입니까?’라고 질문하여 재학햇수를 측정 하였는데, 1년부터 23년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11년이다.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매우 서툰 1, 약간 서툰 2, 보통 3, 약간 능숙 4, 매우 능숙 5점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부여한 값을 합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여 한국어 능력 변수를 측정하였다. α 값이 0.6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데 한국어 능력의 α 값은 0.943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 한국어·문화적응 교육 참여 유무: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에 참여 여부를 물어 참여 한 적이 있다 1, 참여 한 적이 없다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한국어·문화적응 교육 참여는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의 개념이다.

④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변수

- 친족 네트워크에 자리매겨진 사회적 자원: 사회적 자본 변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name generator의 방법이 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적게하는 방법이다. 이름을 적고 직업을 적은 뒤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타내는 것으로 응답자와 응답자가 적은 사람과의 관계 강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파악한다. 이 방법 이외에 사회적 자본 변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린(Lin and

Dumin, 1986)의 방법인 position generator를 이용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직업을 나열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본 연구에 ‘한국에 사는 귀화 또는 남편의 가족 혹은 가까운 친척’ 중)이 해당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 확인한 것이다. 주요 직업을 나열한 후, 강한 연줄을 가지고 있는 가족·친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복수 선택하게 하여 각 직업에 트라이만(Treiman, 1977)의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al prestige scale: SIOPS) 점수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림 한 값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나 마당발 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다.

-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밀도: 가족 외식, 가족과 동반 친목모임, 영화감상 등 문화활동, 가족 여행 각각의 영역에 거의 하지 않는다 1, 1년에 한두 차례 2, 6개월에 한두 차례3, 한 달에 한두 차례 4,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 5점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부여한 값을 합하여 평균을 낸 값을 사용하였다. α 값이 0.6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데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α 값은 0.738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 이웃관계 정도: 이웃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을 보아줄 것을 부탁한다, 경조사에 참석한다,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준다,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한다”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거의 하지 않음 1, 별로 하지 않음 2, 가끔 함 3, 자주 함 4, 매우 자주함 5점을 부여하였다. α 값이 0.6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데 이웃관계의 α 값은 0.869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 정기적 모임 참여: “사교 및 친목 모임, 종교단체의 모임, 국제결혼자 권익 보호 단체의 모임, 기타 모임” 중 1개 이상 참여자 1,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 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정도: ‘본국에 있는 가족과 지난 1년간 전화통화를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전혀 하지 않았다 1, 1년에 한두 차례 2, 6개월에 한두 차례 3, 2-3일에 한두 차례 4, 한 달에 한두 차례 5, 일주일에 한두 차례 6, 거의 매일 7의 값을 부여하였다.
- 출신국으로의 송금 여부: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돈은 연 평균 얼마입니까?’라고 물어 전혀 송금하지 못 했을 때 송금한 적이 없다 0, 금액에 관계없이 송금한 적이 있다 1의 값을 부여하였다.

IV. 상관관계분석

<표 5>는 생활 만족도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가 생활 만족도이므로, 생활 만족도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다. 출신국에서 기타 외국, 거주 지역의 농촌, 취업 여부의 미취업은 기준 집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표 5>에는 그에 대한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먼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겠다. 이 표에 의하면 생활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구조적 속성 변수인 출신국에서 중국 동포($r=.163$), 태국($r=.079$)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필리핀·베트남($r=-.248$)은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거주($r=.148$)는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경제적 자본 변수에서는 본인 소득($r=.094$)과 가구 소득($r=.104$) 모두 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인적 자본 변수 중 연령($r=-.109$)은 생활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학력($r=.070$)과 한국어 능력($r=.201$)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자본 변수들 중에서는 친족 네트워크에 자리매겨진 사회적 자원($r=.152$),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r=.266$), 정기적 참여 모임($r=.054$), 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r=.234$)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수들의 총효과를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구조적 속성 변수인 출신국, 경제적 자본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변수들 중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은 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인적 자본 변수 중 단연 한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연령 등의 순이다.

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포함한 회귀분석을 할 경우 독립변수들 간의 통계적 독립을 전제로 하는 회귀분석의 가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관계수가 .5 이상인 것은 서로 곱하여 통계적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였다. 즉 중국 동포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 한국어 능력이 다른 국가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뛰어 나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관계가 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동포*한국어 능력이라는 변수가 새로 만들어졌다.

〈표 5〉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계수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생활 만족도	1.000																		
(2) 중국 동포	.163***	1.000																	
(3) 중국 한족	.026	-.182***	1.000																
(4) 일본	-.016	-.329***	-.107**	1.000															
(5) 필리핀 베트남	-.248***	-.428***	-.139***	-.251***	1.000														
(6) 태국	.079*	-.165***	-.054	-.097**	-.126***	1.000													
(7) 도시 거주	.148***	.244***	.098**	-.375***	-.117***	-.011	1.000												
(8) 본인 소득	.094**	.179***	.066*	-.153***	-.135***	-.066*	.196***	1.000											
(9) 가구 소득	.104**	.095**	.031	-.146***	-.032	.015	.170***	.140***	1.000										
(10) 연령	-.109**	.140***	.018	.309***	-.204***	-.014	-.062	.051	-.081*	1.000									
(11) 학력	.070*	-.130***	-.028	.244***	-.132***	-.065*	.002	.053	.020	.026	1.000								
(12) 한국어 능력	.201***	.570***	.027	-.264***	-.280***	-.178***	.232***	.201**	.100**	.066*	-.009	1.000							
(13) 한국어 문화적응 교육 참여	.000	-.248***	.005	.055 †	.107**	.118***	-.039	-.070*	-.045	-.095**	.066*	-.195**	1.000						
(14) 친족의 사회적 지원	.152***	-.095**	.031	.132***	-.040	.002	.012	.046	.032	-.019	.186***	-.040	.056 †	1.000					
(15) 가족간 상호작용 밀도	.266***	-.020	.014	-.150***	.049	.032	.233***	.117***	.172***	-.201***	.051	.069*	.052	.132***	1.000				
(16) 이웃관계	.042	.021	-.031	.056 †	.013	.063	-.112**	.030	-.037	.127***	-.014	.050	.036	.035	.071*	1.000			
(17) 정서적 모임 참여	.054 †	-.163***	-.090**	.361***	-.081*	.064*	-.156***	-.043	-.032	.107**	.145***	-.049	.134***	.141***	.016	.204***	1.000		
(18) 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234***	.073*	.063 †	-.132***	-.119***	.008	.197***	.070	.131***	-.143***	.034	.105**	-.042	.052	.248***	-.022	-.048	1.000	
(19) 출신국으로의 송금	.047	.005	.070*	-.313***	.116***	.068*	.186***	.185***	.170***	-.082*	-.059 †	.077*	.049	.096**	.155***	.004	-.138***	.154***	1.000
평균	6.06	.36	.06	.16	.25	.05	.66	374.59	217.37	34.32	11.63	3.31	.18	7.00	2.35	1.77	.56	5.00	.35
표준편차	2.053	.480	.230	.369	.431	.211	.474	859.99	120.75	7.608	3.134	1.132	.385	5.669	.960	.875	.497	1.274	.478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N=945

V. 중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은 두 변수간의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보여 줄 수는 있지만, 다른 변수가 미치는 효과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이다. 모형 1, 2, 3, 4는 단계 별로 변수를 추가해 가면서 분석한 것이다. 이 모형들은 생활 만족도를 각각 8.1%, 8.8%, 13.3%, 20.7%를 설명하고 있다. 모든 독립변수가 포함된 통합모형인 모형4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일본, 태국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리핀-베트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태국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생활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필리핀-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생활 만족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자본 변수 중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종 통합 모형인 모형4에서는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 통제됨에 따라 상대적 영향력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인적 자본 변수들 중에서는 상관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는 학력이 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r=.070$)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회귀분석 결과 학력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본국에서의 학력이 국가간 이동이 되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¹⁾

사회적 자본 변수에서는 친족 네트워크에 자리매겨진 사회적 자원의 크기,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밀도, 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친족 네트워크에 자리매겨진 사회적 자원의 크기 .103,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밀도

1) 설동훈(1999)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 함수 분석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본국에서의 학력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그들의 본국에서의 학력과는 무관하게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해 형성된 인적자본의 국가간 이전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적인 인적 자본 이론의 연구 성과와는 반대로 한국의 외국인노동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임금을 받는 현상을 설명했다.

〈표 6〉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표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i>b</i>	β	<i>b</i>	β	<i>b</i>	β	<i>b</i>	β
구조적 속성 변수								
출신국								
중국 동포	.271	.063	.261	.061	.191	.045	.242	.057
중국 한족	.022	.002	.012	.001	.294	.033	.307	.034
일본	.020	.004	.089	.016	.729**	.131	.663*	.119
필리핀·베트남	-.945***	-.198	-.907***	-.191	-.633**	-.133	-.582**	-.122
태국	.638 †	.066	.667 †	.068	.126**	.116	1.013**	.104
거주지역								
도시 거주	.481**	.111	.425**	.098	.415**	.096	.187	.043
경제적 자본 변수								
본인 소득			.005	.035	.005	.039	.005	.016
가구 소득			.001*	.072	.001 †	.056	.000	.021
인적 자본 변수								
연령					-.051***	-.188	-.037***	-.138
학력					.027	.042	.009	.014
한국어 능력					.242*	.133	.187*	.103
한국어 문화적응 교육 참여					.180	.034	.127	.024
사회적 자본 변수								
친족의 사회적 자원							.037**	.103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밀도							.404***	.189
이웃관계							.053	.022
정기적 모임 참여							.102	.025
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208***	.129
출신국으로의 송금							-.010	-.002
상호작용항								
중국 동포*한국어 능력					.060	.061	.079	.081
절편	5.846***		5.567***		5.947***		3.749***	
R^2	.081		.088		.133		.207	
수정된 R^2	.075		.080		.121		.190	
R^2 변동	.081		.007		.045		.074	
F 값	13.799***		11.247***		11.011***		12.673***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N=945

2) 출신국 기준집단은 기타외국으로 하였다.

3) 거주 지역 가변수는 도시 1, 농촌 0으로 하였다.

.189, 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정도 .129이다. 반면 이웃관계 정도, 정기적 모임 참여 유무 친구 수는 생활 만족도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불특정 다수와 관계(weak tie) 맺음을 통해 형성해 가는 사회적 자본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관계(strong tie)처럼 폐쇄적인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콜만(Coleman, 1988)은 연결망의 폐쇄성 혹은 닫힘(closure)을 이야기하면서 ‘세대간 폐쇄성’(intergenerational closure)이 있는 것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데 유용한 사회적 자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 변수 중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밀도’인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생활에 있어 만족한다면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Ⅶ. 토의와 결론

지금까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다. 물론 한국어 능력과 같은 인적 자본이나 경제적인 부분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구조적 속성 변수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생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태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 여성 결혼이민자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경제적 자본 변수의 효과는 토의가 필요하다. 본인 소득은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가구 소득은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나, 사회적 자본 변수를 통제할 경우 그 효과가 사라진다. 이는 가구 소득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뜻한다. 셋째, 인적 자본 변수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

2) 이혜경(2005b: 96-100)은 혼인이주자의 대응책 중 ‘한국인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주로 친인척이나 동향사람들끼리의 소규모 관계망을 중시하지 한국인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느끼기에 한국인 이웃들이 무시하며, 깔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어 능력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국에서의 학력은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본국에서의 학력이 국가간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사회적 자본 변수에서는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본국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 할수록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의 정도나 정기적 모임 참여 유무 변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네트워크에 자리매겨진 사회적 자본의 크기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크기가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오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³⁾ 하지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출신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정도인 경제적 배경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설동훈 외, 2005: 98-99).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보면 경제적 조건만이 충족된다고 해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가족 내의 유대관계를 통한 신뢰, 가족의 지지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이 생활 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 변수 중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인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생활에 있어 만족한다면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가족과의 유대 관계 형성 및 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본국 가족과의 연결망도 유지 되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는 가족이라는 폐쇄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 구조가 폐쇄적일 때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용이하다고 보는 ‘강한 연줄의 힘’(strength of strong tie)을 보여주고 있다(Coleman, 1988).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적 차원의 노력, 정부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려는 가족과 지역사회 수준의 노력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회통합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3) 국제결혼 증가 원인을 언론보도와 관련단체의 보고서, 학계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이주여성의 경제적 동기이다(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163).

참고문헌

- 강준만. 2005. “국제결혼.” 『한국논쟁 100』. 인물과 사상사.
- 권태환·홍두승·설동훈. 2006. 『사회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 김명소. 2003.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및 행복을 위한 제언.” 보도참고자료.
- _____.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명아. 2006. “사이버공간의 사회자본형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생의 온라인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용학. 2004. 『사회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 박순영. 2006. “사회자본과 지위획득: 사회적 배제의 재조명.”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희봉·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김현미·한건수·고현웅·샐리야. 2003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 _____.박경태·이란주. 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_____.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_____. 2005. “이민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 출판부.
- _____.윤홍식.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 사회복지의 딜레마: 200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Pp. 247-265.
- 슐츠. 1984. 『인적자본론』. 선영규 역. 청한문화사.
-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편. 2003. 『사회자본』. 그린.
- 이영현. 2006. “사회적 자본 연구동향.” 《The HRD review》 9(3): 94-101.
- 이운애. 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 이혜경. 2005a.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아시아이주여성 국제포럼』.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준비위원회.
- _____. 2005b.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Pp. 321-349.

- 정일환·김정희·주동범. 2002. “인적자본론: 이론과 실제.”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 주성수. 2000.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 『사회자본과 시민사회』. 새마을운동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홍두승. 2005. 『사회조사분석』, 제3판. 다산출판사.

- Blau, Peter M., and Otis D.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4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Greenwood Press.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ary S. 198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2nd E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leman, James S. 1986. “Social Theory, Social Research, and a Theory of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1309-35.
- _____.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1.
-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uncan, Otis Dudley. 1961a. “A Socioeconomic Index for All Occupations.” Pp. 109-138 in *Occupation and Social Status*, by Albert J. Reiss, Jr., with Otis Dudley Duncan, Paul K. Hatt and Cecil C. North.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 1961b.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ioeconomic Index.” Pp. 139-161 in *Occupation and Social Status*, by Albert J. Reiss, Jr., with Otis Dudley Duncan, Paul K. Hatt and Cecil C. North. New York: The Free Press.
- Giddens, Anthony. 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New York: The Free Press.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_____. 1985. “Economic Action, Social Structure and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n, Na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 22: 28-51.
- _____.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and Mary Dumin. 1986. "Access to Occupation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 365-385.
- _____, Walter M. Ensel, and John C. Vaughn. 200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393-405.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ECD.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_____. 2000.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Sociological Forum* 15(1): 1-12.
- _____, and Sensenbrenner, Julia.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320-1350.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Treiman, Donald J. 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and Kermit Terrell. 1975. "The Process of Status Attai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3): 563-583.
- Zolberg, Aristide R. 1991. "Bounded States in a Global Market: The Use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s." Pp. 301-325 in *Social Theory for a Changing Society*, edited by Pierre Bourdieu and James S. Coleman. Boulder, CO: Westview Press.

(2010. 10. 10. 접수; 2010. 11. 15. 수정; 2010. 11. 30. 채택)

〈부표〉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

전문직		점수 표준국제직업분류	
11	의사	78	061 의사
12	약사	64	067 약사
13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73	121 변호사
14	대학교수	78	01310 대학교수
15	작가, 예술가	57	0161 조각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16	언론인, 방송인	68	0174 프로듀서, 공연예술가
17	종교인	54	0141 종교장과 종교인 관계된 구성원
18	기타 전문직	57	019 기타 전문, 기술 관련 종사자
관리직			
21	중소기업체 사장(5인 이상 고용)	65	0211 총괄관리자
22	대기업, 은행간부(부장이상)	63	02193 대기업 부장
23	고급공무원(4급 서기관 이상)	64	020 입법공무원, 정부관리직 공무원
24	사회단체 간부(부장이상)	63	02197 상위 노동조합간부
25	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	63	10001 군 장교
26	기타 관리직	60	0219 기타 관리자
반전문, 기술직			
31	교사, 학원강사	61	013 교사
32	간호사	54	00710 전문 간호사, 간호사
33	건축사	72	00210 건축사
34	엔지니어	65	0023 전기, 전자 엔지니어
35	연구원	57	0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36	기타 기술직	57	0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사무직			
41	중간관리직 회사원(차장, 과장)	60	02192 기업과장
42	일반사무직 회사원(계장, 대리, 평사원)	43	03930 하급사무원
43	중간관리직 은행원(차장, 과장)	60	02192 기업과장
44	일반사무직 은행원(대리, 행원)	43	03930 하급사무원
45	사회단체 직원(과장급 이하)	43	03930 하급사무원
46	일반공무원(5급 사무관 이하)	43	03930 하급사무원
47	전화교환수, 집배원	44	038 전화 및 전신기 조직원
48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40	05820 경찰
49	기타 사무직	37	0399 기타 사무원
판매직			
51	도소매 상점주인(5인 미만 고용)	48	041 도소매 자영자
52	백화점,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직원	32	0451 판매원, 점원, 선전원
53	소규모 상점 점원	28	045 판매원, 점원 관련 노동자
54	외판원	28	045 판매원, 점원 관련 노동자
55	부동산 중개인	50	0441 보험, 부동산 및 증권거래인
56	행상, 노점상	24	0452 행상인, 외판원, 신문팔이
57	기타 판매직	15	049 기타 판매 노동자

서비스직			
61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5인 미만 고용)	37	051 자영업자(음식숙박)
62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21	0532 웨이터, 바텐더 관련 노동자
63	아-미용실, 세탁소 주인(5인 미만 고용)	37	051 자영업자(요식숙박)
64	아-미용실, 세탁소 종업원	30	05700 이발사
65	청소부, 파출부	20	0552 파출부, 청소 관련 노동자
66	수위, 경비원	22	55 건물관리원,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
67	기타 서비스직	31	059 기타 서비스 노동자
생산직			
71	생산감독(주임, 반장)	46	0700 생산감독
72	공장근로자(숙련공, 기능공)	46	0700 생산감독
73	공장근로자(반숙련공)	43	084 기계공, 수리공
74	공장근로자(견습공, 비숙련공)	38	072 금속가공처리공
75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18	0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무자
76	고용 운전사(자동차, 중장비)	31	0985 자동차 운전사
77	개인택시, 화물차 운전사	31	0985 자동차 운전사
78	광원	34	0711 광원 및 채석원
79	기타 생산직	38	0729 기타 금속가공 처리공
농어민			
81	부농(2정보=6,000평 이상)	63	06111 부농
82	중농(1-2정보=3,000-5,999평)	47	06110 농부
83	소농(0.5-1정보=1,500-2,999평)	38	06112 소농
84	빈농, 소작농(0.5정보=1,500평 미만)	30	06113 소작농
85	농업노동자, 품일꾼	20	0621 일반 농업노동자
86	축산, 낙농업자	26	0624 가축사육노동자
87	선주	37	06411 배를 소유한 어부
88	어부, 수산, 양식업자	32	0641 어부
89	기타 농어민	14	0629 기타 농업, 축산 노동자

자료: Treiman (1977: 235-260).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in Korea

Ji-Hye Jang

Korea Research Center

The steep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is observed in today's Korean society. Therefore it is not uncommon to find Korean male who married female immigrants to Korea. Finding factors make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tries to show what factors make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clas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variables. I focussed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mong them, and tried to show operating mechanism of the life satisfac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 four points. First,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life satisfaction is different result according to the countries of origin. Second, among social class variables, household incom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wing positive correlation. Third, among human capital variables, Korean language fluency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s significant. However, formal education is not significant, on account of the barrier to transfer crossing borders. Fourth, among social capital variables, interaction between the members of a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It increases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Communication with their families in home country is also important. It is talked over the phone with their families. In addition, social resources embedded on the kinship networks is positive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As a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give assistance to increase their "social capital"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families. Proper policies are needed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is study will give background to make policies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t is necessary to link strongly immigrant families with local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ir social capital.

Key words: international marriage,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약칭: KIM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

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3. 감사 2인
 4. 이사: 당연직 이사 이외에 선임직 이사를 50인 이내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5. 상임이사: 20인 이내로 하되, 총무, 편집, 연구, 기획, 섭외, 국제,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전임 회장, 전임 부회장, 차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차기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이 전임 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

- 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제1차 투표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제1차 투표의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로 정한다.
- ②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가부투표를 실시하며,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선출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제17조에 의한 연구회의 운영, 기타 학

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기획이사는 학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정책토론회 기획 및 개최, 국제세미나 개최,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⑦ 섭외이사는 회원유치,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뉴스레터 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⑧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⑨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제4장 조직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의 승인
 - 5. 본 학회의 해산
 -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1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5. 회원에 대한 포상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상임이사회)

- ① 본 학회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상임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④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회원의 회비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상임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3. 사업에 따른 수입금
 - 4.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5. 본 학회의 기금
 - 6.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anet2007@gmail.com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

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부	가, 부, 부
가, 가, 부분	가, 부분, 근본	가, 근본, 근본	부분, 부, 부
가, 가, 근본	부분, 부분, 부분	가, 근본, 부	근본, 부, 부
가, 가, 부	부분,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	부, 부,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국’(kimanet2007@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 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

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1) 도서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 설동훈·김운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敏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ルゼーション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働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 289-314).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켄마홀, 2006.5.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1권 제2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회 사무국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전화: (063) 270-2917

한국이민학 제1권 제2호

인쇄일: 2010년 12월 31일

발행일: 2010년 12월 31일

발행인: 이혜경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www.kimanet.org

인쇄처: 도서출판 기쁨사

전화: (031) 889-4451

팩스: (031) 889-4452

ISSN 2093-604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1 No.2 2010

Articles

The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Classification,
Boundary Delimitation and Membership Determination of Koreans —————
■ Chulwoo Lee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ponses to Their Children's Education Problems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
■ Yiseon Kim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in Korea —————
■ Ji-Hye Jang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